

선	기관의 장
람	

제 57호
2026년 3월 27일 (금)

차 례

공 고

화성시 공고 제2026-1355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관련 주민 열람·공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1단계)]
화성시 공고 제2026-1356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관련 주민 열람·공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2단계)]
화성시 공고 제2026-1357호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관련 주민 열람·공고 [농업기술센터 내부 순환도로 개설공사]
화성시 공고 제2026-1367호	화성시 공인 등록 공고
화성시 공고 제2026-1380호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신청 공고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115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공시송달(전00씨수도군상만공파종중)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116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문0우)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117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문0우)
화성시 효행구 공고 제2026-118호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공시송달(김0영)
화성시 병점구 공고 제2026-76호	무단방치자전거 공고

고 시

화성시 고시 제2026-372호	화성 동방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26-373호	화성 하저 준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26-377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내 - 목동공원
화성시 고시 제2026-378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목동공원
화성시 고시 제2026-379호	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석우동 축구장 건립사]
화성시 고시 제2026-380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내 - 동탄 패밀리풀
화성시 고시 제2026-381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동탄 패밀리풀
화성시 고시 제2026-382호	도시계획시설사업(공원)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안내 - 큰재봉공원
화성시 고시 제2026-383호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큰재봉공원

회									
람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관련 주민 열람·공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1단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개요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 (2017.06.02.)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사항	변경사유서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 면적변경 - 당초) 115,870㎡ - 변경) 115,982㎡ 증) 112㎡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개요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1단계)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 (2017.06.02.)	
시행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54,750	증) 10	54,760	-	1단계

○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유서

시설종류	변경사항	변경 사유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적변경 - 기정: 54,750㎡ → 변경: 54,760㎡(증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절차(공사완료 보고서 작성 등) 추진을 위한 (사전)부서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화성시장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2. 12. 31.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3.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만세구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467)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031-5189-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계(기정)				66,589	54,750							
소계(변경)				65,903	54,760							
1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89	답	3,512	3,512	화성시	-				
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89-1	답	1,926	1,926	화성시	-				
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0	답	4,875	4,875	화성시	-				
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1	답	4,978	4,978	화성시	-				
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2	답	4,988	4,988	화성시	-				
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3	답	4,932	4,932	화성시	-				
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4	답	1,007	1,007	화성시	-				
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4-1	답	1,340	1,340	화성시	-				
9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5	답	484	484	화성시	-				
10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5-1	답	2,168	2,168	화성시	-				
11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6	답	2,809	2,809	화성시	-				
1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296-1	답	2,343	2,343	화성시	-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299	구	1,722	1,025	국(농수산부)	-				
13	변경	장안면 독정리	1299	구	1,441	1,032	화성시	-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300	구	628	220	국(농수산부)	-				
14	변경	장안면 독정리	1300	구	223	223	화성시	-				
1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0-1	답	1,135	1,071	화성시	-				
1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0-2	답	5,054	4,453	화성시	-				
1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	답	1,272	1,078	화성시	-				
1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1	답	531	479	화성시	-				
19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2	답	2,756	2,588	화성시	-				
20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3	답	3,007	2,824	화성시	-				
21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4	답	484	430	화성시	-				
2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2-1	답	1,887	1,655	화성시	-				
2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3	답	3,096	2,501	화성시	-				
2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4	답	2,932	718	화성시	-				
2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5	답	1,626	210	화성시	-				
2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6	답	5,097	136	화성시	-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1단계)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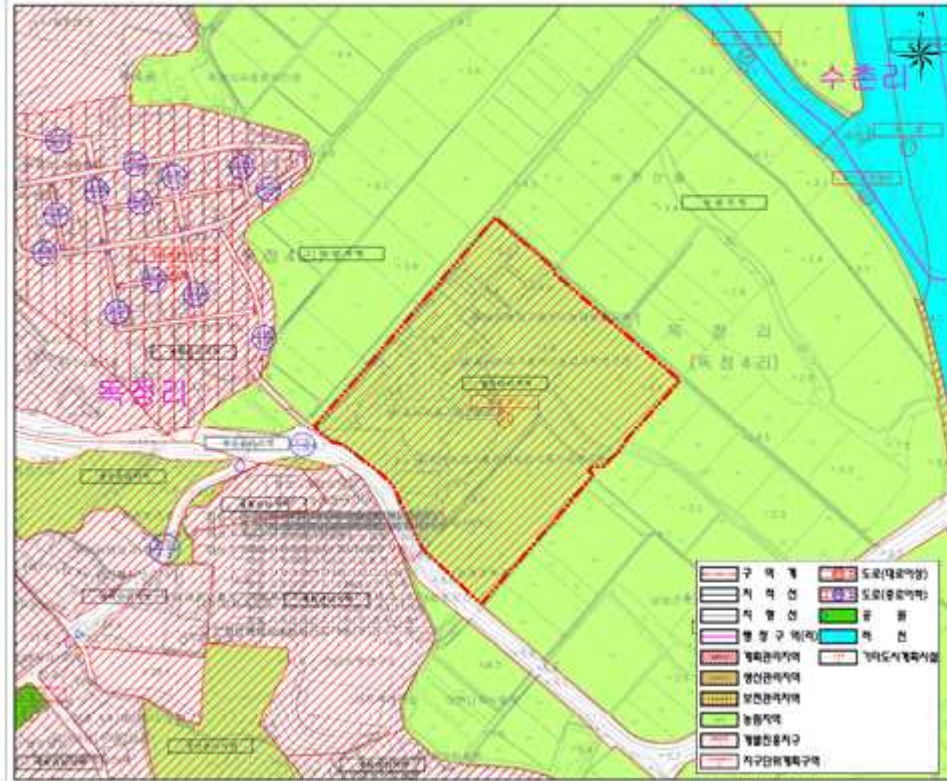
1 위치도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2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2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단계별 계획도(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관련

주민 열람·공고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2단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개요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 (2017.06.02.)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사항	변경사유서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 당초) 115,870㎡ - 변경) 115,982㎡ 증) 112㎡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개요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307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2단계)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인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 (2017.06.02.)	
시행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307번지	61,120	증) 102	61,222	-	2단계

○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유서

시설종류	변경사항	변경 사유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 기정: 61,120㎡ → 변경: 61,222㎡(증 102㎡) •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 국유지 매수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화성시장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2. 12. 31.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3.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만세구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467)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031-5189-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기정)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 계(기정)				100,439	61,120							
소 계(변경)				80,397	61,222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299	구	1,722	409	국(농림축산식품부)	-				
1	변경	장안면 독정리	1299	구	1,441	409	화성시					
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0-1	답	1,135	64	화성시	-				
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0-2	답	5,054	601	화성시	-				
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	답	1,272	194	화성시	-				
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1	답	531	52	화성시	-				
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2	답	2,756	168	화성시	-				
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3	답	3,007	183	화성시	-				
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4	답	484	54	화성시	-				
9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2-1	답	1,887	232	화성시	-				
10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3	답	3,096	595	화성시	-				
11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4	답	2,932	2,214	화성시	-				
1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5	답	1,626	1,416	화성시	-				
1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6	답	5,097	4,961	화성시	-				
1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7	답	3,922	3,922	화성시	-				
1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8	답	3,697	3,697	화성시	-				
1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9	답	3,208	3,208	화성시	-				
1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10	답	3,133	3,133	화성시	-				
1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11	답	1,695	1,695	화성시	-				
19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12	답	5,200	5,200	화성시	-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394	유	24,419	4,728	국(농림축산식품부)	-				
20	변경	장안면 독정리	1394-3	유	4,807	4,807	국(기획재정부)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417	구	1,556	1,468	국(농림축산식품부)	-				
21	변경	장안면 독정리	1417	구	1,472	1,472	국(기획재정부)					
-	기정	장안면 독정리	1418	도	1,075	991	국(농림축산식품부)	-				
22	변경	장안면 독정리	1418	도	1,010	1,010	국(기획재정부)					
2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19	답	3,506	3,506	화성시	-				
2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0	답	4,868	4,868	화성시	-				
2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1	답	4,821	4,821	화성시	-				
2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2	답	2,580	2,580	화성시					
2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2-1	답	2,418	2,418	화성시					
2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422-2	답	3,742	3,742	화성시	-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2단계)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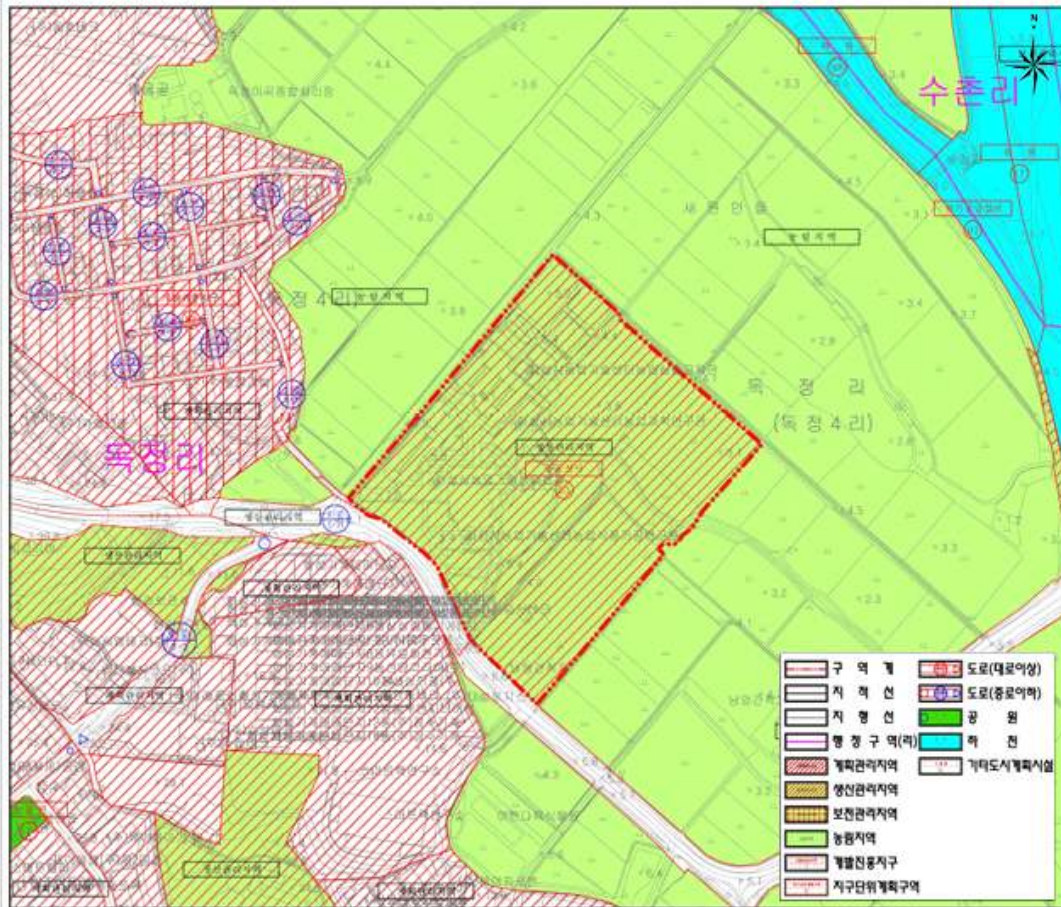
1 위치도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2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작성 관련 주민 열람 · 공고 [농업기술센터 내부 순환도로 개설공사]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8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앞서, 같은 법 제90조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안) 개요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호 (2017.06.02.)	

○ 도시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변경사항	변경사유서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변경 - 당초) 115,870㎡ - 변경) 115,982㎡ (증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분할에 따른 면적 변경

2.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 인가 개요

가.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9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명 칭 : 농업기술센터 내부 순환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실시계획(변경)인가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15,870	증) 112	115,982	화성시 고시 제2017-245 호 (2017.06.02.)	
시행	23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89번지	1,388	-	1,388	-	

○ 실시계획(변경) 인가 사유서

시설종류	변경사항	변경 사유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간 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 ~ 2022. 12. 31.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28. 12.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정절차(공사완료 보고서 작성 등) 추진을 위한 (사전)부서협의 지연으로 사업기간 연장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화성시장

○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 15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구분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당초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2. 12. 31.
변경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202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3. 열람기간 : 공고일 익일부터 14일간

4.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만세구청 안전건설과, 만세구 장안면 행정복지센터

5.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

6. 의견제출 : 관계도서를 열람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도시정책과(031-5189-2467) 및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031-5189-36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기정)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 계				22,645	1,388							
1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0-2	답	5,054	153	화성시	-				
2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	답	1,272	78	화성시	-				
3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1	답	531	35	화성시	-				
4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2	답	2,756	148	화성시	-				
5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3	답	3,007	168	화성시	-				
6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1-4	답	484	32	화성시	-				
7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2-1	답	1,887	109	화성시	-				
8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3	답	3,096	346	화성시	-				
9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4	답	2,932	259	화성시	-				
10	변경없음	장안면 독정리	1305	답	1,626	60	화성시	-				

주민의견 제출서

사업명	화성시 농업기술센터 내부 순환도로 개설공사	
사업위치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307번지 일원	
사업시행자	화성시장	
의견진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주민공람공고에 따른 의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에 따라 주민 의견청취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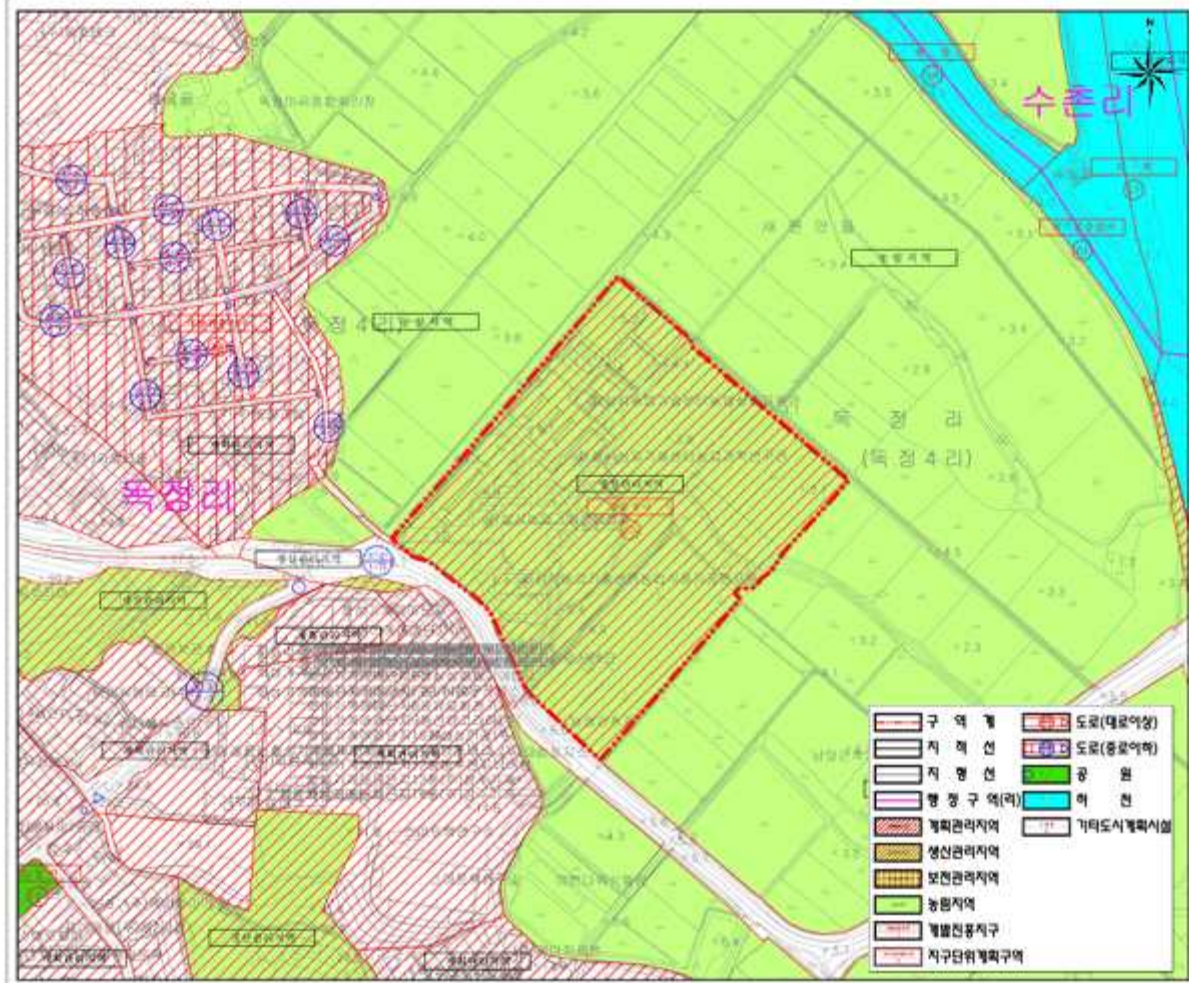
1 위치도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독정리 1290번지 일원



2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도시관리계획 결정도(변경없음)



○토지이용계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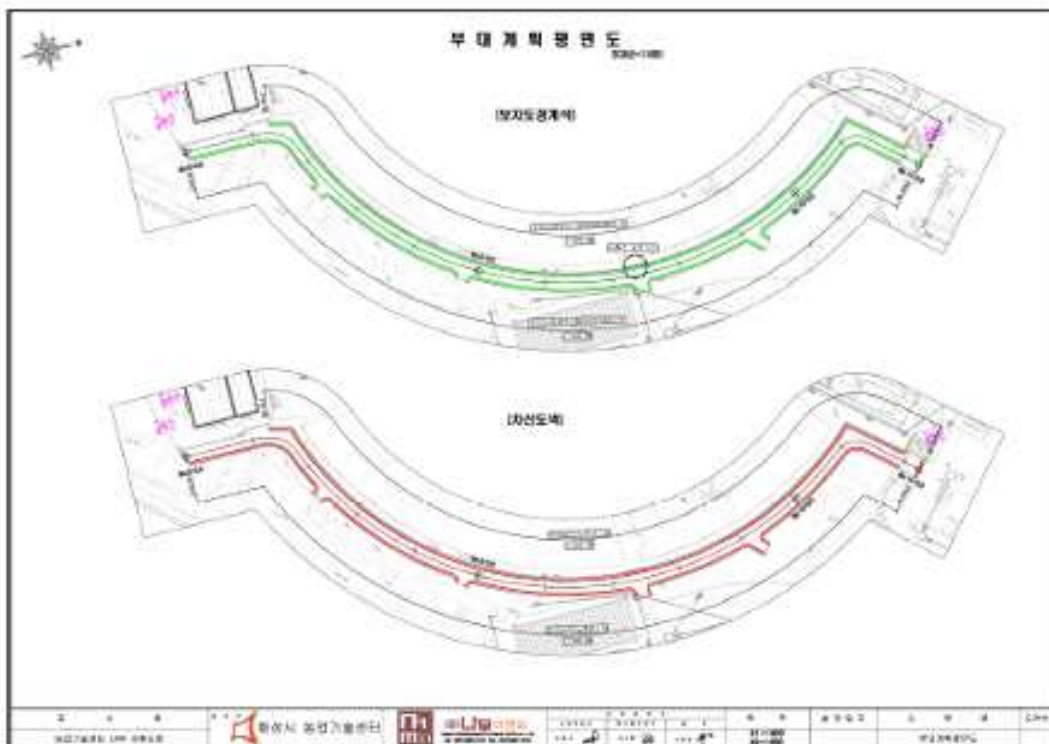


3 설계도면(변경없음)

○전체계획평면도



○부대계획평면도



화성시 공인 등록 공고



「화성시 공인 조례」 제7조(공인의 신조, 개각) 규정에 의한 등록 공인을 같은 법 제11조(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7일

화 성 시 장

1. 공인 등록일: 2026. 3. 27.
2. 공인 등록 사유
 - 수입금출납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신조
3. 공인명 및 인영
 - 등록: 2개

【등록 공인】

공인명	인영	공인명	인영
화 성 시 토 지 정 보 과 수 입 금 출 납 원 인		화 성 시 재 산 관 리 과 수 입 금 출 납 원 인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신청 공고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 도모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화 성 시 장

1. 사업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 도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4. ~ 12.
- 지원형태 : 중·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FTA기금 연리 1%, 이차보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 사업내용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 방역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안전시설, 기타시설(출하분류기, 사료배합기 등),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및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등

3. 지원대상 및 자격 요건(지침 2P)

- 지원대상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①-②-5)
 -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경력확인서, 고등·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지원자격(지침 3P~4P)

- 당해연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신용조사서 발행)

- 축사 신축,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지원요건(지침 4P~5P)

- 생산성 향상에 의지가 있는 농가
- 후계농업인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축사를 고정건축물 축사로 신축하는 농가
- 폭염, 혹한 등 이상기온 대비 시설·장비를 설치할 경우
- 그 밖의 지침 상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농가

□ 지원제외(지침 5P~7P)

- 과거 3년간('23.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되거나, 처분을 받은 농가 중 지원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그 밖의 지침 상 지원 제외 대상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지침 7P~9P)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 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 : 선풍기, 환기팬, 송풍팬, 클링패드, 안개분무기, 차광막,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 농장출입문, 대인소독시설, 방역실, 축사전실 등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악취저감시설 등

□ 안전시설 : 채광창 덮개, 집수조·분뇨처리시설 추락 방지시설 등

□ 경관개선시설 : 축사 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공사 등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및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 그 밖의 지침 상 지원자금의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내용

5. 지원액 산정(지침 12P~13P)

- 축종별, 규모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 산출

6.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사업대상자 동의서 각 1부
- 자조금 납입확인서(닭, 계란, 오리, 육우, 양봉, 사슴에 한함)
- 축산업 허가증, 가축사육업 등록증, 양봉산업 등록증 사본 중 1부
- 농업경영체 등록증
-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필증 사본
- 은행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대출가능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제외 조치)
- 견적서 및 원가계산서 등
- 건축 인허가(개발행위 허가 등) 필증 사본 등(신축일 경우)
- 특별재난지역 피해 농가의 피해사실확인서
- 해당될 경우 기타 서류(3년 이상 경영일지, 방역기록부, 후계농확인서, 가축개량사업에 참여중인 한우·젖소 육종농가 확인 서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서, 깨끗한 축산농장 인증서, HACCP 인증서 등)

7.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6. 3. 27.(금) ~ 4. 8.(수)
- 접수장소 : 화성시 축산정책과
 -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 포함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하여 접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축산정책과(031-5189-18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요약] 2026년 축사시설개선사업 시행지침 추가 개정

구분		현행	개선	비고
탄소감축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지원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근거 신설	▲현장 수요 대응
농업용 베일러		▲사료 자동 급여기,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지원 중	▲고정형 농업용 베일러 사용 용도에 추가	▲현장 수요 대응
연무 분사기		▲방역·방제 장비 지원 중	▲방역·방제를 위한 다목적 연무 분사시스템 추가	▲현장 수요 대응
안전 관련	안전 의무 강화	▲별도 지침 부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농가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안전 시설	▲질식사고 예방 시설·장비자금 지원 가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채광창 덮개, 집수조 추락 방지시설 등 지원용도 신설	▲축사 추락·질식 사고 예방
서식	기성고 확인서	▲지방정부 자체 양식 활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표준양식 첨부	▲통일된 양식 제공
집행절차		▲자금 수요에 따라 수시로 자금배정·대출실행	▲2개월 단위로 대출수요 파악 및 대출 미실행된 대여금 반납(9월, 12월)	▲기금 운용 효율화

〈서식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
 [농가 작성용]

1. 사업자 현황	대표자명(법인명)		연락처	자택 : 휴대전화 :					
	집 주소								
	농장명		연락처						
	농장 주소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한(육)우, 돼지에 한해 작성	참여 브랜드경영체명 또는 한우사업단명		계약일시	년 월 일 ~ 현재					
2. 경영현황 (현재)	○ 축 종 : 한(육)우, 양돈, 양계(산란, 육계, 토종닭, 육용종계, 토종종계), 부화장(육용종계용, 토종종계용), 오리(육용오리, 종오리), 낙농(젖소), 양(흑염소 등), 꿀벌, 사슴 등으로 구분 ○ 사육형태 : 일관(), 비육(), 번식(), 기타() - 해당란에 ○ 표시								
	총 사육두수	번식(모돈, 번식우, 착유 등)	육성축	자 축					
	마리(군)	마리	마리	마리					
	주) 현 사육기준이며 축종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연도별 출하실적〉 : 낙농의 경우 연 우유생산량(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5px;"> <tr>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23</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24</td> <td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25</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마리</td> <td style="text-align: center;">마리</td> </tr> </table>				'23	'24	'25	마리	마리
'23	'24	'25							
마리	마리	마리							
3. 사업계획	사업구분 : 신축(), 개축(), 개보수(), 시설교체() - 해당란에 ○ 표시								
	사업계획 농장 주소 :								
	신청 사업비 : 뒷면에 기재								
	가축사육시설 면적 신규대비 : 뒷면에 기재								
	※ 첨부서류 : ①축산업 허가(등록)증(모든농가) ②사업예정부지 등기부등본(신축농가는 필수 제출) ③토지이용 계획 확인원(모든농가) ④신용조사서(모든농가) ⑤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⑥우선순위, 후순위 및 지원제외 등에 관한 증빙자료								
4. 지원제외 대상 확인	신청자 본인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상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시 사업자 선정이 무효가 되는데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flex-end; margin-right: 50px;"> 신청인 : _____ (인)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 font-weight: bold;">화 성 시 장 귀하</p>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6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7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용자	이차보전	자부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행 면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m ² (마리)	m ² (마리)	m ² (마리)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용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m ²)	천원/m ²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m²)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별표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농장명·연락처(주택, 휴대전화)·주소 (집주소, 농장주소)·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용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활용

4. 제공 받는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화 성 시 장 귀 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별표 3>

자조금 납입확인서

(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①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 ② 시·도(시·군·구)는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단위 : 원)

기 간	도축마리수		
		납부할 금액(A)	실제 납부한 금액(B)
'25.1~12월 (<u>닭·계란은 '23~'25년</u>)			

5. 납입율(B/A)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조금 관리위원회	'25년(<u>닭·계란은 '23~'25년</u>)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시·도 (시·군·구)	'25년(<u>닭·계란은 '23~'25년</u>)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 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

2026. 3.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요약] 2026년 축사시설개선사업 시행지침 추가 개정

구분	현행	개선	비고	
탄소감축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설치 지원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지원근거 신설	▲현장 수요 대응	
농업용 베일러	▲사료 자동 급여기,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지원 중	▲고정형 농업용 베일러 사용 용도에 추가	▲현장 수요 대응	
연무 분사기	▲방역방제 장비 지원 중	▲방역방제를 위한 다목적 연무 분사시스템 추가	▲현장 수요 대응	
안전 관련	안전 의무 강화	▲별도 지침 부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시설 설치 의무화	▲농가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안전 시설	▲질식사고 예방 시설·장비자금 지원 가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채광창 덮개, 집수조 추락 방지시설 등 지원용도 신설	▲축사 추락·질식 사고 예방
서식	기성고 확인서	▲지방정부 자체 양식 활용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표준양식 첨부	▲통일된 양식 제공
집행절차	▲자금 수요에 따라 수시로 자금배정·대출실행	▲2개월 단위로 대출수요 파악 및 대출 미실행된 대여금 반납(9월, 12월)	▲기금 운용 효율화	

2026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I

사업개요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 축산 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정책과	과 장 신우식 사무관 임성호 , 주무관 박소영	044-201-2326·2328

※ 축종별 지원가능 여부, 우선순위 인증 등은 해당 축종에서 안내

I. 사업개요

1. 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해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촉진하여 생산성 향상과 축산업 지속 가능성 제고 도모

2.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지원내용 및 예산

- 지원내용 : 축사 신축 및 개보수, 생산설비 또는 방역시설 등 설치비용 지원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
 - * (FTA기금) 연1%, 5년 거치 10년 상환, (이차보전) 연2%, 5년 거치 10년 상환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합 계	264,748	218,318	115,750	144,625	144,933	158,500
용 자	89,298	52,154	38,400	54,400	67,946	72,800
이차보전	122,500	122,500	54,200	61,300	48,000	54,000
자부담	52,950	43,664	23,150	28,925	28,987	31,700

II.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1. 사업대상(FTA기금)(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14.12.31일 이전에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신청일 현재 축산업 허가, 등록이 유지되는 경우)
 - ① '14.12.31일 이전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일로 확인
 - ②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②-③)
 - ③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스마트축산단지 설치 주체
- ※ 농업법인의 경우 담보설정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더라도, 대출기관에서 해당 법인이 자금상환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 시 지원 가능
(관련 조항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①-②-5)

1-2. 사업대상(농특회계 이차보전)(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된 농가 및 농업법인
 -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축종의 경우, 농업경영체로 확인
 - ※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양봉농가(농업법인 포함)
- ①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 또는 ②고등학교* 또는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대표자에게 적용)
 - * 고등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 등 축산 관련학과
 - ** 4년제 대학교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축산(학)과, 동물자원과학과, 축산경영학과, 축산개발과, 영양학과, 유가공학과 등 축산 관련학과

※ (경력·졸업 확인) 근무 농장의 경력확인서(건강·연금·고용·산재보험 납입확인서 등), 고등·대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증명서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 당해년도에 대출실행을 완료할 수 있는 사업대상자

- 축사 신축, 이전, 증축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대상자
- 기자재(폭염·혹한·방역 장비 등) 구입·설치 등으로 인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
- *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축산악취개선사업, 방역인프라사업 등

< 지원요건 >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다음의 경우를 사업신청자 평가 시 고려
 - 생산성 향상에 의지가 있는 농가
 - 3년 이상 경영일지·방역기록부, 축종별 생산지표(MSY, 1등급출현율, 산란율, 일당 증체량, 착유량 등) 기록·관리 일지 작성
 - 「후계청년농어업인법」 제2조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에 해당되는 사업대상자(법인인 경우 법인대표자)
 -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12조에 따른 축산지구로 이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 축사를 고정건축물 축사로 신축하는 농가
 - 폭염, 혹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설·장비·자재를 설치할 경우
 - 임신돈 군사공간 확보('30년부터 기존 농가 적용)를 위해 축사시설 및 스톨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양돈농가
 - 농협경제지주 젓소개량사업소의 유우군 능력검정사업에 참여하는 낙농가
 - 과거 1년('25.1월~'25.12월) 한우 거세우 출하 평균월령이 26개월 미만인 경우
 -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사업에 참여한 경우
 - * 비육용암소시장 육성사업 참여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
 - 가축개량사업에 참여 중인 한우·젓소 육종농가
 - 「한센병사업 관리지침」에 따른 한센인 정착마을 거주인
 - 이외 ①사업추진 가능성 및 ②정부정책 참여도 등을 시·도에서 자체 판단
-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다음 각 기관으로부터 지정(또는 인증)받은 사업신청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시 가점 부여
 - (농림축산식품부) 방목생태 축산농장
 - (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 (축산물품질평가원) 저탄소 축산물

- (축산환경관리원) 동물복지 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환경친화축산농장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안전관리인증(HACCP)3
- (지자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축산지구 내에 축사 신축 또는 증개축하려는 농가
- (지자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축사로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신청을 한 농가
- (농협) 건축법 제23조제4항과 건설기술진흥법 제6조, 축사표준설계기술자문위원회운영지침(농식품부훈령)에 따라 인증된 축사표준설계도서에 따라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사·도 및 시·군·구에서는 사업신청자 평가 시 다음의 경우를 자체적으로 감점 부여

- 직전년도에 축산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1회), 시정명령 등 기타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

< 지원 제외 >

- 과거 3년간('23.1.1일 이후) 축산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징역, 벌금, 과태료 등 처분이 확정되거나, 처분을 받은 농가 중 지원 제한 기간에 해당되는 농가
 - 대상 법령 :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약사법」
 - * 「약사법」은 살충제성분 검출 관련 처분에 한함
 - * 다만, 가축질병 예방 등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 가능(단, 지자체 담당자는 지원제외 대상자 선정시 지원이 필요한 사정과 지원제외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대상자가 지원제외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원제외 사유 및 지원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농식품부에 제출)
 - 지원 제한 기간
 - 1) 징역(집행유예 포함), 벌금 : 3년
 - 2) 과태료(동일 위반행위로 직전년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조업중지·사용정지) : 2년
 - 3) 위반사항이 적발된 후 처분결정 미확정 : 처분 결정시까지 사업대상자 선정 보류
 - * 다만,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를 갖추지 않은 이유로 처분을 받은 농가는 방역시설에 한해 지원가능
- 비닐하우스 형태의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신축하는 경우
- 남은 음식물사료를 돼지에 급여하여 사육하는 양돈농가

- '23.1.1일 이후 축산관련 인증·지정의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3년간 지원 제외
 - * 다만, 사업대상자가 인증·지정을 자진 취소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
 - 대상 인증·지정 : 친환경 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 관련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인증의 취소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의4(인증의 취소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환경친화축산농장의 지정) 제4항, 「동물보호법」 제2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제4항
- 과거 3년간('23.1.1일 이후) 다음 연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장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 사업 완료 시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가축분뇨법」에 따라 부여받은 이행 기간까지 자금 회수를 유예할 수 있음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단, 신규농가 또는 축산업을 승계한 농가는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 조건)
- 미신고 승마장·승마시설
- 과거 3년간('23~'25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 「축산법」 제33조의2 제3항에 따른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미이수자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용자상환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FTA농어업법」 제5조)

- 과거 2년간('23.1월 이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정의)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 이력이 있는 농가 (단, '23.1월 이후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제1종 가축전염병은 제외한다.)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닭·계란·오리·육우·양봉·사슴에 한함)
 - * '24.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23~'25년)
- 과거 3년간('23.1.1일 이후) 다음 년도로 지원액의 30% 이상 이월하거나 대출마감일 연장한 경우
 - * 다만, 추가 선정(사업대상자 변경)으로 인해 이월 및 대출마감일 연장이 불가피했던 농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지원 가능
- 과거 3년간('23~'25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당해년도 6.1일 이후에 사업을 중단*(지원액의 30% 미만 집행한 경우를 말함)하거나 포기한 경우
 - 다만, 국책·공공 사업, 토지수용 등이 원인이 되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 가능

◆ **농가 및 지자체 확인 사항** :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농가는 사업신청이 제한되며,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라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자금 전액을 환수(사업대상자 선정 무효) 조치함

* 지자체는 후순위 및 지원제외와 관련하여 사업대상자가 제출하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검증 과정을 거쳐야 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공통사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지원하되, 이 사업에 미기재된 사항이라도 축사시설현대화 및 생산성 향상이라는 사업 취지에 따라 지원여부를 판단
-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경관개선시설의 신축과 개보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지원
 - 건축비에는 설계비, 감리비, 철거비 등 포함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는 완전 건축물 축사에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비닐하우스 형태 가설건축물의 개축, 개보수, 시설 교체는 농장전체가 「축산법」의 허가·등록 기준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사 내에 부속되어 설치되는 시설로서 급이시설, 급수시설, 전기시설, 착유시설, 환기 시설, 조명 시설, 발열 시설, 소방 시설 등
 - (양돈) 쿨링패드 및 축사냉난방 장치, 자동급이기 및 급이시스템 구축, 분만틀, 축산 법령에 적합한 스톨, 슬러리 시스템, 인공수정센터의 정액생산시설, 제조실
 - (가금) 발육기, 발생기, 이란기, 콘트롤기, 세척기, 부화중지란 처리기, 축사냉난방기, 냉음용수 급수시스템
 - (소) 로봇착유시설, 자동포유기, 발정탐지기, 송아지 우리, 소몰이 장치, 착유실 매트, 사료 자동 급여기, 소 체중저울, 자동목걸이, 레일을 포함한 자동화된 사료배합기, **조사료 가공을 위한 고정형 농업용 베일러 등**
 - (양봉) 고정 건축물 형태의 양봉사와 벌통(소초광만 지원 불가)
 - (말) 육성·조련 마사시설 등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가금) 계란·종란 보관창고, 집란기, 계란 세척기·선별기·건조기, 부적합란 처리기기, 포장기, 왕겨자동살포기, 왕겨창고
 - (양돈) 자동 인큐베이터 (양봉) 양봉산물 저장고·창고, 꿀 저장용기, 채밀기, 농축시설, 꿀 저장용기 운반용 트레일러·리프트, (말) 자동보행기, 말 수송 트레일러 등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별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다목적(방역·환경 등) 연무 분사 시스템**, 알·분뇨 벨트덮개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 축사 전실을 축사에 부속되어 설치하는 경우 축사시설로 분류
- 축산물품 보관시설 : 깔짚저장고(창고), 물품저장고(창고), 사무실 등
 - * 농장 내 가옥 등 생산과 무관한 시설에는 지원불가
- 가축분뇨처리시설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가축분뇨 발효액 순환시스템, 착유 세척수 처리시설, 퇴비사 등 포함)
 - 악취저감시설 : 악취를 포집하거나, 미생물·훈증·미량화학물질 활용 등을 통해 악취를 소거하는 고정시설(ICT악취측정기 등 포함)
- 안전시설 : 채광창 덮개, 집수조·분뇨처리시설 추락 방지시설 등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설

- 기타시설 : 출하분류기, 사료배합기, 축사청소 등을 위한 빗물 저장고 등 기타 가축생산·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 가축분뇨 저장조 등에서 농가 및 근무자의 질식사고 예방 장비 : 환기장치, 가스농도 측정기, 공기 호흡기, 송기 마스크 등
 - * 축사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여부판단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밀원수 포함),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 경관개선시설 설치만을 이유로 사업을 지원받을 수는 없고, 축사 신개축,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설치와 병행하는 경우 지원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및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으로 생산된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음
 - 다만, 농업법인은 에너지를 축산업에 직접 이용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가능

4. 지원형태 및 방법

- FTA기금 및 이차보전 : 용자 80%, 자부담 20%
 - * 이자율 : (FTA기금) 연리 1% (이차보전) 연리 2%
 -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상환
- 용자 또는 자부담은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농가 분류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을 기준으로 지원
 - FTA 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14.12.31일 기준 축산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축사면적이 중·소규모 농가인 경우 지원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 축산업 허가·등록 대상이 아닌 기타 가축은 통계자료, 현장확인 등으로 판단
- (사업기간) 1~2년
 - 부지 확보(변경)가 필요한 축사 신축·이전·증축 또는 지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는 2년 사업으로 추진 가능
 - * (1년차) 인허가 등 공사 전 필요한 조치 완료 → (2년차) 사업착공
 - * 다만, 시·군에서는 부지확보 및 인허가를 이미 완료하는 등 당해년도에 사업완료 및 자금집행이 가능하다는 판단하는 경우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가능

○ 별도예산배정

- 산란계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0.05m²/마리 → 0.075)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산시설 및 케이지 등을 수선·교체하고자 하는 산란계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별도 예산배정
-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가 지역단위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 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검토하여 별도 예산배정
- * 다만, 예산 배정 시 해당 지자체의 개별 농가에 대한 예산은 일정 부분 축소하고, 사업이 취소될 경우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

- 사업신청자의 주소지와 사업예정지가 행정구역상 시·군·구를 달리할 경우 농장(사업예정지 포함)의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타 시·군·구 주소지 거주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주의

< 사업 의무 준수사항 >

- 「축산법」에 따라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 충족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방역·소독시설을 설치·구비
 - (방역시설) 사람·차량에 대한 방역시설과 휴대용 방역기 구비
- (목적에 부합하는 사용) 사업 완료 농가는 사후관리 기간 내 지원받은 시설물을 가축사육 등 지원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 축사의 신축·개축·증축으로 지원받거나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고 사후관리기간까지 매일 가동하며, 악취 기준 초과시 악취를 저감해야 함(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에 한함)
 - 다만, 사업 대상자 선정 전에 악취민원 없었던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판단하여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 축산환경관리원의 악취저감 컨설팅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수해농가는 경영기록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양돈농가는 전산경영기록부 유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추락·질식사고 등) 예방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설치·구비
- 양돈농가는 남은음식물사료 급여 금지(다만, 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에 따라 남은 음식물의 이동 제한이 해제된 농가는 제외)

- 의무 미이행 농가는 적발 시 지원액 일부 또는 전액 환수
 - 각 지자체는 농장주의 시군 내 허가·등록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농어업경영체 D/B상 사육두수 자료도 참고하여 판단

※ 지자체 확인 사항 : 「축산법」의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 및 「가축 전염병 예방법」의 방역·소독시설 설치 여부

- ① 지원 전에 기준 준수 여부를 항목별로 확인
- ② 위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사업 계획에 포함하도록 지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③ 사업 완료 후, 위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정산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축종별 수급동향, 사육특성, 축사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범위 등 조정 가능
- 정책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다음 사업의 경우 면적 상한 미적용

- ① 기존 원종축장의 확대 또는 종축장 간 계약 등을 통하여 ‘전문 종축장 체계화’(원종축장+종축장)를 하려는 경우
- ② 농림축산식품부의 산지생태축산농장으로 지정되거나 사업자로 선정되어 초지 및 산지를 활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사육하려는 경우
- ③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축산 시범단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가 조성한 부지 내에 시설을 조성하여 입주하려는 경우
- ④ 광역 악취저감사업, 지역단위 축산개편사업 등 지자체 단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다만, 지자체 단위 사업이라도 개별농가별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면적 상한을 적용)

-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경우

* 단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만 한함

- ⑥ 2027년까지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0.05㎡/마리 → 0.075)에 참여하는 산란계 농가

< 지원액 산정 기준 >

- (면적기준) FTA기금 사업대상자는 대상면적 산정 시 기존 보유 축사면적을 포함하여 사업규모 면적 이내에서 지원
 - 이차보전 사업대상자는 기존 보유 축사면적과 관계없이 추가로 지원 가능하나, 최대상한액 이내에서 지원
 - * FTA기금 사업대상자가 이차보전으로 신청할 경우 기존 보유면적과 관계없이 이차보전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농가를 지원하는 경우와 2027년까지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0.05㎡/마리 → 0.075)에 참여하는 산란계 농가의 경우 면적 상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농가별 상한액) 축종별 규모별 지원한도 지원범위 내에서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를 곱하여 농가별 상한액을 산출
 - 다음 표에 따른 지원형태별 '최대상한액' 초과는 불가
 - * 단,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의 경우, 지원대상 면적 및 상한액에 참여농가 수를 곱한 값을 최대 지원 면적 및 상한액으로 봄
 - 이전년도 지원된 사후관리 대상 농가가 재신청하여 추가 지원받는 경우, 농가별 상한액에서 기지원액을 감한 금액을 상한액으로 함
 - 한편,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축사의 피해복구*나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에 참여하는 산란계 농가의 경우 지원액 상한을 농가당 8,000백만원으로 함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한 농가에 한함
 - ** 단, 산란계사 지원 상한액 확대는 '27년까지 한시적으로 함
- 동물복지(형) 축사시설(사육밀도 등의 기준을 준수) 및 유기축산물 인증 축사시설을 설치 시 지원단가 및 상한액의 10%까지 상향 지원 가능
 - * 지원단가 상향(예시) : 산란계 720천원/㎡ → 792, 육계 360천원/㎡ → 396
 - * 상한액 상향(예시) : 산란계 3,600백만원 → 3,960, 육계 1,800백만원 → 1,980
- 지원형태별 상한액 내에서 실비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축종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 >

구 분	축사 면적당 지원단가	FTA기금		이차보전		
		중·소규모		대규모		
		지원 대상 면적(m ² , 이상~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지원 대상 면적(m ² , 초과~이하)	지원 최대 상한액	
한(육)우	380천원/m ²	110~1,728	657백만원	1,728~4,320	1,642백만원	
양돈 (종돈,인공수정 포함)	967천원/m ²	265~2,880	2,785백만원	2,880~7,200	6,962백만원	
양 계	육계 (토종닭 포함)	662천원/m ²	460~4,500	2,979백만원	4,500~11,250	7,448백만원
	종계 (토종종계 포함)	680천원/m ²	915~7,425	5,049백만원	7,425~16,500	11,220백만원
	부화장 (토종계 포함)	1,684천원/m ²	100~810 (16~135)	1,364백만원 (227백만원)	810~1,800 (135~300)	3,031백만원 (505백만원)
	산란계 (산란중추 포함)	1,182천원/m ²	420~4,500	5,139백만원	4,500~11,250	13,298백만원
오 리	육용오리	662천원/m ²	820~6,300	4,171백만원	6,300~14,000	9,628백만원
	종오리	680천원/m ²	555~4,496	3,057백만원	4,496~9,990	6,793백만원
	오리 부화장	1,684천원/m ²	33~270	455백만원	270~675	1,137백만원
낙농	380천원/m ²	213~1,800	684백만원	1,800~4,500	1,710백만원	
양봉	883천원/군	30~270군	238백만원	270~600군	530백만원	
사슴 (엘크)	380천원/m ²	150~1,215 (200~1,656)	462백만원 (629백만원)	1,215~2,700 (1,656~3,680)	1,026백만원 (1,398백만원)	
양과 흑염소	456천원/m ²	165~1,337	610백만원	1,337~2,970	1,354백만원	
말	648천원/m ²	50~234	152백만원	234~650	421백만원	
메추리	1,182천원/m ²	100~2,700	3,191백만원	2,700~6,750	7,979백만원	
토끼	732천원/m ²	70~945	692백만원	945~2,632	1,927백만원	

< 공통 사항 >

- ① 총 사업액의 80% 지원액 기준임
- ② 가금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형태를 말함)에 대한 최대 상한액은 시·군·구 판단에 따라 상한 산정시 지원단가의 50% 내에서 감하여 적용 가능
- ③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및 **저탄소 분뇨 처리시설**은 위 지원 단가 및 최대 상한액과 별도로 추가 지원
- ④ 특별재난지역내 피해 축산농가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을 신청한 경우와 산란계 케이지 면적 확대(0.05㎡/마리 →0.075㎡)에 참여하는 산란계 농가의 경우 면적 상한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농가당 지원 상한액도 8,000백만원으로 함

< 축종별 특이 사항 >

(한우·낙농) 자가배합사료(TMR) 제조장비는 규모와 관계없이 6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가금) 축사의 차단방역 시설·장비의 보완이 필요한 가금 사육농가에는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 사업을 통해 방역 시설·장비 지원 가능

(양봉) 이동형 카라반은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담)

- * 이동형 카라반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가는 양봉협회 등 양봉관련 단체로부터 양봉기자재 현대화 농가로서 추천을 받은 중·소규모 농가여야 하며, 해당 관련 서류를 사업 신청 시 첨부
-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 * 토종벌 농가에게는 개량형 벌통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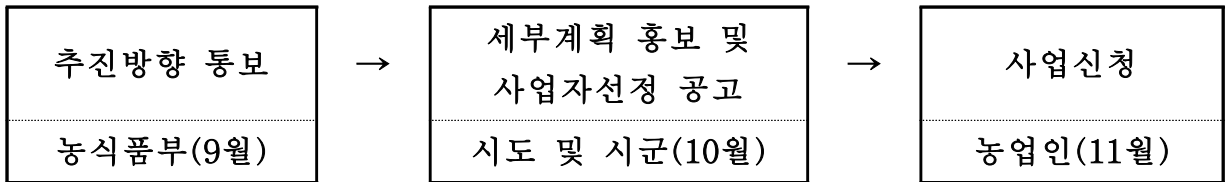
(말) 말 수송 트레일러(별도의 차량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형태)는 규모와 관계없이 20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초과분은 자부담)

- * 시·군·구는 1년 1회 이상 정상이용 여부와 소재지 점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총괄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기관	시·도(시·군·구)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
기금 관리주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1. 사업 공고 및 사업신청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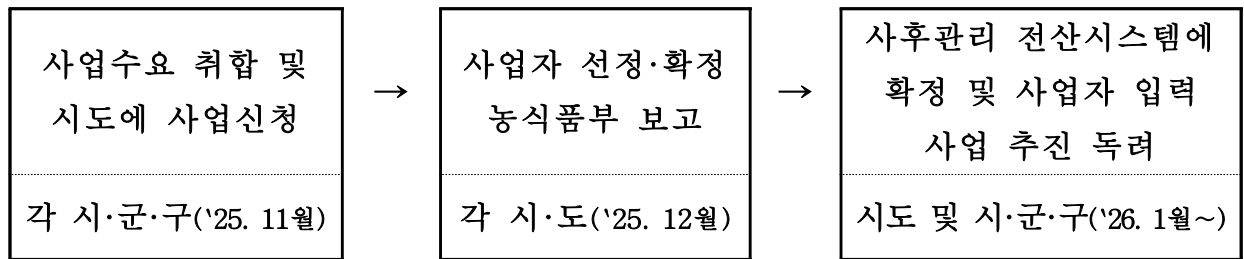
< 농림축산식품부 >

- 사업시행지침 수립 및 사업시행기관에 통보(9월)

< 사업시행기관 >

- 사업 홍보 및 사업자 선정 공고를 실시(10월)
 - 사업신청 기간 이후에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경우 지자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업 포기자 발생 시 추가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
- 농가는 시·군·구(축산담당부서)에 <서식 1>에 따라 사업 신청(11월)
 - 전문 종축장은 <서식 1-2>에 따라 사업신청1
 - 시·군·구는 <별표 1>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별표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
 - * 가금 계열농가는 계열주체를 통한 사업신청 가능
- 시·군·구는 신청농가에 사업 의무사항(방역시설 구비 등)을 안내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에 해당 사항을 반영토록 할 것
 -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소독·방역 시설 설치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 또한, 사업 수행 불가에 따른 중도 포기가 최소화되도록 건축법, 농지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 사항을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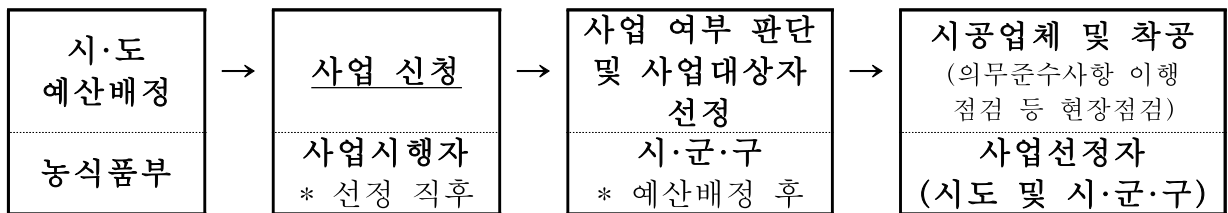
2. 사업자 선정단계



< 사업시행기관 >

- 시·군·구는 사업검토 및 심의 후 사업 대상자를 1차적으로 선정하고, 시·도에 사업 선정 내역 보고('25. 11월)
 - 사업대상자 선정 전에 과거 악취민원 발생 유무를 확인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시 반영
- 시·도는 예산 현황,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시·군·구가 보고한 내역 중에서 사업자 확정('25. 12월)
 - *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에 따라 농식품부가 최종 사업자 확정 가능**
 - 사업신청자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대출 실행률을 고려하여 예산의 120%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 선정
 - * 먼저 사업을 완료한 농가가 대출을 우선 실행하도록 하며,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2년차 사업으로 전환하여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
 - * 이차보전 사업의 경우 전년도 대출기간을 연장한 금액만큼 대상자 선정 불가
 - 선정되지 않은 사업신청자들은 예비사업대상자로 우선순위를 지속 관리하고 사업포기자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 선정 및 내역 보고
- 각 시·도는 사업자 확정 결과를 농식품부에 <서식 4>에 따라 보고('25. 12월말까지)
- 시·군·구는 사업자가 확정되는 대로 사후관리전산관리시스템에 해당사항을 입력하여 사후관리조사가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 시·도 및 시·군·구는 확정된 사업대상자가 공사에 필요한 사전 행정절차(인허가 등)을 추진토록 적극 조치
 - 대상자 확정('25. 12월) 후 신속히 착공이 가능하도록 농가에 안내하고, ICT 악취측정 기계·장비 설치 대상농가가 있는 경우 축산환경관리원 악취관리지원센터(042-822-9875)에 컨설팅을 의뢰
- 지자체는 사업자에게 우수한 축산 기자재가 공급되도록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검증 기자재, 또는 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 등록 품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당해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되는대로 지체없이 사업지원계획 또는 사업선정 내역에 따라 시·도별 예산 배정('25.10월)

< 사업시행기관 >

- 사업대상자의 사업 신청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농식품부에 보고
 - 각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확인하고, 농가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보완 지시
 - * 농가가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야 함
 - 법령 및 사업목적 적합여부,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에 대한 사정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체없이 사업대상자 선정 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이후 농가가 3개월 이내 착공(구매계약 포함)하지 않는 경우 농가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징구해야 하며, 추진계획 미제출 및 불가피한 사유없이 착공(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도(시·군·구)는 계획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가능
 - * 시·도(시·군·구)에서 선정을 취소한 경우 지원 제외 사유로 보지 않음
 - * 사업 추진 계획 제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상반기 내 착공(계약)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 선정 취소
 - 지자체 축산부서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건축 및 환경 부서에 사업자 선정 결과를 공유하고 축산농가가 건축허가 등 필요한 인·허가를 받도록 적극 협업하여야 함
- 사업자가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을 제한하고,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토록 관리·확인
- 사업자가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토록 조치 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 소규모 건축물, 축사표준설계도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 사업 대상자 >

- 각 사업대상자는 선정 통보를 받는 대로 지체없이 시공업체 선정 및 착공
 - * 지자체의 대상자 확정 통보없이 착공하는 것은 대상자 선정 취소 사유이므로 각 농가가 절차 준수토록 유의
 - 각 사업대상자는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출
 - * 건축, 토목, 전기 등 축사관련 신·개축 시 공사 설계도와 세부원가내역을 제출이 필요하며, 시설설치, 단순 개보수인 경우에도 구체적 공사 내역과 세부 견적을 확보하여 공사내역을 명확히 구체화
 - 대상자 확정에 따라 착공이 가능하도록 사업 신청 이전 및 사업 확정 이전 단계에서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완료토록 권장
 - * 대상자 확정 통보 이후 3개월 이내 불가피한 사유없이 미착공 시 사업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신속히 공사 진행되도록 할 것
- 장비·기계구입을 제외한 토목 및 건축공사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자가 시공이 불가하며, 건축·토목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한 시공업체와 계약
- 사업자는 설계전문업체와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여 감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확인
 - 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감리가 필요없는 경우는 감리 불필요

◆ 공사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 ▶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
 - 1.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2.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3.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 및 규모가 주위환경이나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5.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도시·군계획에 지장이 있다고 지정한 구역 제외)에서 건축하는 연면적200㎡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400㎡이하의 축사 등

4. 자금배정 및 대출실행단계

< 농림축산식품부 >

- 시·도지사 및 대출취급기관(농협)에 지출한도액 배정 통지
- 2개월 단위로 FTA기금 대출 수요를 파악하여 자금배정

< 사업시행기관 >

- 지자체는 사업대상자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운용규정」 등의 규정된 사항에 따르도록 지도
- 지자체는 신청 시 농가가 제출한 계획 대비 사업완료를 확인하고, 당해 사업의 실적에 따라 정산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 후 집행
- 대출 실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는 최소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증빙을 구비하도록 하고(계약서, 세금계산서, 통장 내역 등 금융거래자료, 영수증 등) 사후관리 기간 내 비치·보관하되, 아래 기준 준수
 - 사업 기간 중 사업선정자 명의의 ‘사업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거래 자료를 일원화하고 투명하게 증빙될 수 있도록 조치
 - 자부담 우선원칙에 따라 자부담 우선 집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집행하며, 통장 송금 내역 등을 통해 직접 집행 여부를 증빙
 - * 각 지자체는 자부담액의 출처가 농가자기현금인지, 은행대출인지 등 여부를 농가로부터 확인받고, 필요한 경우 제3자의 거래내역도 징구
 - 연간 자부담 2억 이상(사업비 10억)의 공사로 기성고로 집행되는 공사의 경우 자부담의 50%까지만 우선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은 기성고에 따라 정산 및 대출을 실행할 수 있음
 - 사업계획 수립부터 세부견적을 징구하여 증빙하고, 정산 시에도 세부 거래명세를 첨부하여 투명하고 명확한 증빙이 되도록 할 것
 - * 시공업체 시공 시(건축, 전기 등) :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원가내역서를 받아 보관하고, 준공 시에도 세부 준공정산 내역 증빙 및 거래명세 확인
 - * 장비 구매 시 : “장비 구매 및 설치 1식” 등의 공사 총액단위 증빙은 지양하고, 세부 견적 및 거래명세 증빙 유지
- 2개월 단위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현황을 사업주관과(축산정책과)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 >

- 대출 실행 시 시·도(시·군·구)가 통보한 사업 추진실적을 근거로 사업시행지침 및 대출요건이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사업 추진 범위 내에서 대출 실행
- 대출 실행 완료 사업자에 대해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에 통보
- 예산의 120% 범위 내 사업대상자 선정에 따라 시·도별 대출실행 여건 등을 검토하여 대출실행이 원활하도록 지출한도액을 농림축산식품부로 재배정 요청하고, 2년차 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비를 12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보고
- 대출취급기관은 사업대상자가 대출 실행 전이라도 대출실행 가능 여부 등을 문의할 경우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완 방안 등을 적극 알려야 함
- FTA기금 대출자금 중 미실행된 대여금은 반납(9월, 12월)
 - 다만 기성고에 따라 대출실행된 경우는 9월에 반납하지 않음
 - 대출마감일 연장조치를 하지않은 대여금은 12월에 일괄반납
 - 미대반납된 사업자는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재발급을 통해 다시 자금배정 가능

5. 이행점검단계

- 각 시·군·구는 사업추진기간 중 대상농가에 대한 연 2회 현지점검 및 지도 실시
 - 농가의 공정률, 사업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고, 필요시 시정·지도
 - * 농가가 의무 방역시설 설치를 정상 추진 중인지에 대해 집중 점검
 -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원인 및 해소 방안 강구
- 지원농가에 대해 <서식 4>에 따른 관리기록부 작성·보관(15년)
- 농림축산식품부 사업담당자는 연1회 이상 시·도 담당 공무원 및 농협경제지주 담당자와 합동으로 사업추진 점검
 - * 농식품부는 시·군·구의 사후관리 전산시스템 적기 업데이트 여부, 사후관리 대상 농가에 대한 시·군·구 자체 현지점검 실적 등을 주요기준으로 점검대상 선정
- 농협경제지주는 축종·시도별 사업량 및 지원예산 확정에 따른 사업대상자 명부 및 자금 대출실적 취합관리 및 농식품부 보고
 - 수혜농가 경영기록부 및 양돈·양계 전산기록부 제출여부 확인

6. 사후관리단계

- 각 시·군·구는 사후관리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점검대상 농가를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 현지점검 실시
 - *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되, 사후관리전산시스템을 통해 의무 이행 미흡 또는 조사거부 농가등을 우선적으로 점검할 것을 권장
- 점검 후 시·도에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고하고, 시·도는 점검결과를 익년도 1월 말까지 취합하여 <서식 3>에 따라 농식품부에 보고
- 방역·소독 의무 미준수 농가에 대해서는 관심대상으로 지정하고 반드시 다음 점검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 적극 관리
- 지원농가가 농협경제지주가 추진하는 사후관리 업무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
- 현지점검 결과, 농가에 지원된 자금이 유용 또는 목적외 사용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의 관계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도(시·군·구) 및 대출취급기관은 자금회수 등 관계법령으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분 조치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사항인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의뢰
- 사후관리 기간
 - (사후관리 기간) 사업완료 후 용자대상자에 대한 용자금 전액 상환시까지
 - * 사후관리 기간은 해당 사업자금 당해년도의 사업지침을 적용
 - (시설 양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 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하되,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에는 시·도(사업주관기관)의 승인 후 조치
 - * 축산업이 농업법인(운영실적 1년 이내 포함)에 승계되는 경우 지원자금 승계 가능
 - (불가피한 처분)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불가피하게 처분해야 할 경우 대체 시설·장비의 구입을 전제로 하되, 여건 변화에 따라 대체시설이 필요 없을 경우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타용도 사용)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기간 내 타용도(장기간임대, 담보설정 등) 사용 또는 미사용하는 농가의 경우 시·도에 그 사유와 처분내역, 사용계획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협의(시·도 승인)
 - (축종 변경) 시·도의 승인 후 조치
 - * 축사, 기계·장비 등의 활용 가능성, 변경 적정성, 판매 여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한 후 지속 사후관리
 - * 일부 시설·장비가 필요없어 판매 등 처분되는 경우 자금회수 등을 검토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평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농협경제지주)
- 평가대상 : 사업대상자
- 평가절차 : 사업주관기관(시·도)의 사업실적 보고 결과 및 농림축산식품부, 시·도 합동 사업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평가 실시
 - * 필요한 경우 등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평가 실시 가능
- 시·도는 원활한 사업평가를 위해 사업결과보고서를 당해년 11월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 제출하여야 함(관련 서식과 작성 방법은 '26.3월까지 별도 안내)
- 평가시기 : '26년 12월말까지
- 평가내용 : 사업진척, 문제점 및 개선조치 사항 발굴 등
- 평가결과 개선조치 사항 발굴시 사업지침 개선
- 농림축산식품부 평가전담부서의 농림사업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편성 방향과 제도개선사항을 환류

IV. 2027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27년도 사업수요조사

- 사업주관기관(시·도)으로부터 사업수요 조사('26년 하반기)

2. 2027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6년 하반기에 통보되는 2027년도 사업시행지침을 준용하되, 향후 추가 공문을 통해 일부 지침내용이 개정될 수 있음

<신청 사업비>

(단위 : 천원)

구분	세부계획	사 업 비			
		'26년 (※ 2년차 사업인 경우 '27년까지 구분하여 작성)			
		용자	이차보전	자부담	계
축사					
	소계				
축사시설 및 축산시설					
	소계				
방역시설					
	소계				
	소계				
합 계					

<현재 축산업허가(등록)증상에 기재된 가축사육시설 면적과 완공후 면적 신규대비>

현 행 면 적 (축산업 허가(등록)면적, 사육두수)		공사계획면적	사업완료후 전체 면적
m ² (마리)		m ² (마리)	m ² (마리)

<지원한도액 확인>

정부지원 신청액(용자)	천원
정부지원 신청액(이차보전)	천원
면적당 신청액 = (정부지원액) / 공사계획면적(m ²)	천원/m ²

주) 정부지원 신청액은 개소당 지원한도액과 가축사육시설 면적(m²)당 최대 지원한도액을 범위내에서 신청

<서식 1-2>

종축장(종돈, 종계, 종오리장) 전문화 사업계획서

1. 사업대상자 현황

경영체명			
대표자	사업자 번호		
	축산업허가번호		
소재지	(주사업장)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2. 일반현황

○ 사업주체 사육현황

소재지	종 축(GP)			원종축(우) (GGP, GPS)	기타	시 설	
	성축	육성축	자축			설치년도	축사형태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참여(계열, 계약, 위탁 등)농가 사육현황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재지	사육규모		참여형태	전문 인력	축산업 허가번호
			종축	기타			

* 사육현황은 최근 기준으로 작성

○ (종돈장의 경우) AI센터 활용(자체운영 포함)

센터명	소재지	응돈규모	공급량	비고

○ 주체 및 참여농가(GP, PS) 사업현황

경영체명	검정실적			분양실적(종축)			분양실적(모돈/실용축)		
	'23	'24	'25	'23	'24	'25	'23	'24	'25

- * 분양실적(종축)은 경영주체가 GP 및 PS를 분양한 실적
- * 분양실적(모돈/실용축)은 참여농가가 모돈 및 실용축을 분양한 실적

○ (종돈장의 경우) 주체 및 참여농가 질병관리 등

경영체명	네트워크참여	우수종돈장 선정 년도	방역 위생수준	친환경농장 지정

3. 사업계획

가. 사업목표

- 종돈(종계, 종오리 등) 개량 방향, 질병 청정화 계획, 종돈공급 등

나. 사업체계도

- (종돈장의 경우) GGP, GP(참여농가), AI 간의 모식도 등
- (종계장, 종오리장의 경우) GPS, PS(참여농가) 간의 모식도 등

다. 사업추진계획

① 전문종축장 운영방법 등

- 참여종축장 지분참여 및 역할분담 내용
 - * 참여종축장과의 계약관계 유지 방법 또는 페널티 등 포함

- GGP(GPS)와 GP(PS)간 운영, 공급 계획
- 전문인력 보유 및 확보계획(GGP, GPS)
- (중돈장의 경우) 능력검정 및 중돈개량네트워크 구축사업 참여계획

② 시설투자계획

- 대상자별 시설개선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세부시설				
		용자	이차보전	자담	계
축사					
내부시설					
계					

* 년차별로 추진시는 사업비를 구분하여 표시

③ 운영자금 활용계획

④ 담보제공

⑤ 종축 개량 및 청정화 계획

* 개량의 방법(선발, 검정, 기타형질 개량, 국내외 개량컨설팅, 등 구체화)

⑥ 시설개선후 운영계획

⑦ 사업손익전망

⑧ 자금상환계획

<별첨> 기타 관련 증빙자료(사본 가능)

<서식 2>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수요신청서

(시·도)

(담당자 : , ☎)

단위 : 호, 백만원

구 분	신청 합계		세부 내역			
	농가수	요청액	용자(FTA기금)		용자(이차보전)	
			농가수	요청액	농가수	요청액
한(육)우						
양돈						
양계						
오리						
낙농						
양봉						
사슴						
양·흑염소						
말						
메추리						
토끼						
합 계						

* 축종별로 작성하고, 요청액은 정부 지원액만 작성

<서식 3>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이행점검 보고(○○○○년)

(시·군·구 명) 지원 개요

연도	선정농가수* (정산농가수)	지원액(천원) (선정총액)	지원액 (정산총액)**
2010	10(9)	100,000	90,000
2011	9(9)	90,000	80,000
2012	11(10)		
2013	13(11)		
2014	숫자는 예시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 선정농가 수는 연내 선정된 농가 총수를 기재하고, 괄호 안 정산농가 수로는 정산완료 및 사업완료된 농가 수 기재(용자 + 보조, 이차보전 모두 포함한 지원액)

** 용자+보조의 경우 정산 후 지원총액, 이차보전의 경우 사업완료된 농가지원액을 포함시키고, 정산 및 사업 미완료된 연도의 경우 작성 시점 수치로 기재

점검 대상 농가 선정 방법

- (선정방법)
- 관심대상 농가 현황(방역시설 미설치·운영 미흡 농가, 지도 점검 필요 농가)

(연도) (상·하반기) 점검 대상 농가 개요

- 선정 대상 농가 내역

대상 농가 명	주소	선정년도	사업비(지원액)	점검실시일

농가별 점검결과 (농가별 반쪽~1쪽 수준으로 기재하고, 필요 시 사진등 첨부)

- (방역·소독시설 구비 여부 및 운영상황)
- (시설 유지상황, 사후관리기간 내 양도 여부, 경영기록부 작성 등 제 의무사항 이행 여부)
- (결론 및 조치결과)

*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 시 기재사항 등 추가 가능

<서식 5>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업실적(기성고) 확인서

사업추진실적 확인서							
주소							
성명			생년월일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추진일정
			계	대출금	자부담	보조금	
	축사신축 장비구매	500평 ○○장비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100,000천원 100,000천원 50,000천원	26. 3월중순 26. 4월중순 26. 4월초순
총계		250,000천원	250,000천원				
사업실적	사업내용	총투자계획(A)		사업추진실적(B)		실행률 (C=B/A)	
	축사신축 장비구매	100,000천원 100,000천원		60,000천원 100,000천원		60% 100%	
	* 총투자계획은 공사 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 * 사업실적은 누계로 기재하고, 증빙자료 및 현장답사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정 - 증빙자료: 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정 확인서 등으로 확인						
대출신청내역	기 대출액(D)		금차 대출 신청액(E)		대출 총계(F=D+E)		
	축사신축 장비구매	30,000 천원	축사신축 장비구매	30,000천원 100,000천원	축사신축 장비구매	60,000천원 100,000천원	
기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 농·축협 신청인(사업대상자) (서명 또는 날인)							
상기 내용에 대한 추진(계획/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출취급기관은 대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 : 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광역시·농업기술센터의 장 (직인) 발급자 : 주무관 ○○○ ☎ ○○○-○○○-○○○○ 대출취급기관장 귀하 ※ 대출취급기관에서는 대출 실행결과를 사업추진확인서 발급기관(지자체)으로 통보바람							

※ 대출 가능금액은 신청인에 대한 신용 및 담보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를 통해 결정됨

<별표 1>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수집 개인정보 항목

- 수집항목 : 대표자명(법인명) · 농장명 · 연락처(주택, 휴대전화) · 주소 (집주소, 농장주소) · 축산업허가(등록)증 고유번호(농장식별번호) 등
- 개인정보 수집방법 : 사업신청서, 사후관리 조사서

2. 수집 및 이용 목적

-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실적 현황관리
- 사업 정보 전달, 진행 현황 파악 또는 성과지표 통계분석

3.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사후관리기간 동안 이용하고, 사업농가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업 종료 후 용자 전액 상환 시(15년)까지 보유 · 활용

4. 제공 받는자

- 사업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축산경영과)
- 사업시행기관 : 해당 시·도(시·군·구) 지자체
-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사료자재부)
- FTA기금관리기관 : 농수산물유통공사(FTA기금팀)
- 대출취급기관 : 농협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사업 대상자 선발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

-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 받는자 외의 타인/타기업/기관 등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및 조회에 관하여 자세한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 동의서

본인은 ○○○○년 축사시설현대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침 등 관련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특히 다음의 주요 준수사항을 명확히 확인하고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1.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 소독시설을 설치한다.
2.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 강화를 위해 차량 소독조(농장 정문 입구)를 설치한다.
3. 휴대용 방역기를 구비한다.
4. 사후관리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원 방문에 적극 협조한다.
5. 사업대상자는 사후관리기간 내 타인에게 시설 등을 양도시 자금회수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합병·통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원 자금을 승계코자 할 경우 광역자치단체장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농장경영기록부를 작성한다.
7. 당해연도 예산 부족 시 차년도 예산으로 지원받는다.

향후, 사업지침 및 상기 준수항목 미준수 사항이 있을 경우 보완하고, 보완에 지속 불응할 경우 지원 자금이 회수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

사업자 성명 :

<별표 3>

자조금 납입확인서(예시)

- ① 축종별 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서식으로 대체
- ② 시·도(시·군·구)는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1. 사업신청자(대표자 성명) :
2. 주소(전화번호) :
3. 축산업 허가(등록)증 고유번호 :
4. 납입내역

(단위 : 원)

기 간	도축마리수		
		납부할 금액(A)	실제 납부한 금액(B)
'25.1~12월 (<u>닭·계란은 '23~'25년</u>)			

5. 납입율(B/A) : %

6. 확인자

확인주체	확인사항	직함	성명	서명 또는 인
자조금 관리위원회	'25년(<u>닭·계란은 '23~'25년</u>) 동안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자조금 납부금액			
시·도 (시·군·구)	'25년(<u>닭·계란은 '23~'25년</u>) 동안 도축장으로부터 해당농가의 출하 도축마리수 및 납입율 등 확인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기술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업 대상자 취소 등 불이익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사업신청자 성명

(인 또는 서명)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예정 통보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효행구청장

1.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관련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3. 공시송달 대상자 : 전00씨수도군상만공파종중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위	용도	구조	면적 (㎡)	시정요구기한
전00씨수 도군상만 공파종중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효자각로 00-00	화성시 서신면 효자각로 208-27	형질 변경	묘지조성	임-묘지조성	200	2026.04.25

5. 공고기간 : 2026.03.27. ~ 2026.04.10. (14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7.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허재국	전화번호	031-5189-7719
------	------------------	----------	---------	------	---------------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효행구청장

-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공시송달 대상자 : 문 0 우
-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위 유형	용도	구조	면적 (㎡)	시정요구기한
문0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로21 8번길000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송라리 541-3	형질변경	야적장	고물상	436	2026.03.25

- 공고기간 : 2026.03.27. ~ 2026.04.10. (14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허재국	전화번호	031-5189-7719
------	---------------	----------	---------	------	---------------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효행구청장

-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공시송달 대상자 : 서 0 환
-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위 유형	용도	구조	면적 (㎡)	시정요구기한
서0환	안산시 상록구 이화6길 000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원리 144-9	신 축	관리사 (창고)	파이프비닐 (비닐하우스)	40	2026.04.25

- 공고기간 : 2026.03.27. ~ 2026.04.10. (14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허재국	전화번호	031-5189-7719
------	---------------	----------	---------	------	---------------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7일

효행구청장

-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시정명령
-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공시송달 대상자 : 김 0 영
-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위 반 행 위 내 역					
성 명	주 소	행위지	행위 유형	용도	구조	면적 (㎡)	시정요구기한
김0영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596번길 42-000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천천리 29-1	형질변경	농지조성	임야-전	32	2026.04.25
			신축	축사	경량철골조	30	
			형질변경	대지화	물건적치	10	

- 공고기간 : 2026.03.27. ~ 2026.04.10. (14일간)
 -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 기타
-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화성시 효행구 도시건축과	담당자 직/성명	주무관 허재국	전화번호	031-5189-7719
------	---------------	----------	---------	------	---------------

무단방치 자전거 보관 공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3. 27. ~ 2026. 4. 10.
2. 발견장소: 병점동 815번지, 진안동 824-25번지 일원
3. 발견일시(계고장 부착): 2026. 1. 29., 2026. 2. 25.
4. 보관일(수거일): 2026. 3. 13.
5. 보관대상: 무단방치자전거 5대
6. 처분: 공고 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주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매각, 기증, 공공자전거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7. 보관자전거: [붙임] 참조
8. 무단방치 자전거 반환 청구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점구 안전건설과 (☎031-5189-41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3월 26일

화 성 시 병 점 구 청 장

무단 방치 자전거 수거 관리 대장

연번	사 진	색 상 (문 구)	실시 일자	수거 장소	보관 장소
1		흰색/ 안장없음	3/13	병점동 815	병점동 546-2
2		검은색	상동	간만동 824-25	상동
3		검은색	상동	상동	상동
4		검은색/ 안장없음	상동	상동	상동
5		검은색/ 안장없음	상동	상동	상동

화성 동방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7-54호(2017.2.1.)호, 제2019-355(2019.7.18.)호, 제2020-771(2020.12.11.)호, 제2021-427(2021.6.17.)호, 제2022-971호(2022.12.16.)호, 제2024-155호(2024.2.28.)호, 제2025-277호(2025.4.4.), 제2025-277호(2025.4.4.), 제2025-613호(2025.7.24.) 로 고시된 화성 동방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화성 동방 일반산업단지계획을 변경 승인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27일

화 성 시 장

1. 산업단지 명칭·위치 및 면적

- 가. 명 칭 : 화성 동방 일반산업단지
-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1번지 일원
- 다. 면 적 : 121,212.1㎡,

2. 산업단지 지정목적(변경없음)

- 가. 화성시 및 주변도시에 산재한 개별입지공장을 집단화하여 계획적·체계적인 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 나. 개별입지공장에 따른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내 산업경쟁력 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에 이바지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 가. 성 명 : (주)동방이엔씨 외 17개사
- 나. 주 소 : 인천시 서구 염곡로 472, 5층 505-3호(가정동, 대건프라자)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변경)

- 가. 개발기간 : 기정) 2017년 2월 ~ 2025년 12월 31일
 변경) 2017년 2월 ~ 2026년 12월 31일
- 나. 개발방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매치계획(변경)

가. 유치업종(변경없음)

식료품제조업(C1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나.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업종	표준산업 분류코드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계		78,887.5	100.0	
식품제조업	C10	3,168.1	4.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0	18,300.0	23.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5,685.6	7.2	
1차 금속제조업	C24	2,332.1	3.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25	24,725.7	3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2,415.9	3.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6,387.3	20.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5,872.8	7.4	

※ 태양에너지발전설비(태양력발전업, D35114)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계	121,212.1	100.0		
산업시설용지	78,887.5	65.1		
지원시설용지	2,984.3	2.4		
공원녹지용지	소계	7,723.7	6.4	
	공원	2,254.2	1.9	
	녹지	5,469.5	4.5	7.5% 미만
공공시설용지	소계	31,616.6	26.1	
	주차장	747.6	0.6	0.6% 이상
	도로	18,052.0	14.9	8% 이상
	오수처리시설	405.8	0.3	
	전기공급설비	10,517.9	8.7	철탑 1개소
	유수지	1,893.3	1.6	저류지 2개소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1) 도로

○ 총괄표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수 (개소)	연장 (m)	면적 (㎡)
계	3	1,161	18,052	-	-	-	3	1,161	18,052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3	1,161	18,052	-	-	-	3	1,161	18,052	-	-	-
소로	-	-	-	-	-	-	-	-	-	-	-	-

○ 도로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중로	2	1	15	집산 도로	116	국도 82호선	중로 2-2호선	일반 도로	지원시설 용지1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850	덕우리 178-14번지 일원	중로 2-3호선	일반 도로	전기공급 설비1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195	중로 2-2호선	덕우리 362번지	일반 도로	문화공원1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2)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노외주차장	팔탄면 덕우리 산66-2번지 일원	팔탄면 덕우리 354번지	747.6	-	747.6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3) 공원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 원 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동방산단 공원	문화공원	팔탄면 덕우리 산66-2번지 일원	팔탄면 덕우리 353번지	2,254.2	-	2,254.2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4)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5,469.5	-	5,469.5		
기정	1	1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36번지 일원	275.5	-	275.5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기정	2	2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69번지 일원	2,348.7	-	2,348.7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기정	3	3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56번지 일원	1,027.6	-	1,027.6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기정	4	4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43번지 일원	869.2	-	869.2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기정	5	5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50번지 일원	948.5	-	948.5	화성시고시 제2024-115호 (2024.2.28.)	

5) 유통 및 공급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전기공급설비 (철탑시설)	팔탄면 덕우리 351번지 일원	10,517.9	-	10,517.9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6) 방재시설

[우수지 계획]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893.3	-	1,893.3		
기정	1	우수지	저류시설 (지하저류조)	팔탄면 덕우리 346번지	1,366.7	-	1,366.7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기정	2	우수지	저류시설 (지하저류조)	팔탄면 덕우리 337번지	526.6	-	526.6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7) 용수공급계획

가. 생활용수

- 생활용수는 「상수도 수요량 예측 업무편람 2018.9, 환경부」 업종별 종사자수를 산정하여 상수도 단위급수량(300L/인·일)을 적용하여 산정
- 단지내 생활용수량은 122.1㎡/일로 산정됨

나. 공업용수

- 공업용수는 실입주(예정)기업 18개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결과 1개사((주)헵스캠, 9톤/일 발생)가 사용하고 그 외 17개사는 공업용수 사용없음.

다. 용수공급계획

○ 단지 남측 지방도310호선에 기 매설된 기존관로(D150mm)에서 연결하여 공급

구 분	수요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31.1	-	131.1	
공업용수	9	-	9	· (주)헵스캠(9㎥/일)
생활용수	122.1	-	122.1	· 지원시설(4.5㎥/일) 포함

8) 오·폐수처리계획

[오·폐수처리계획]

가. 폐수처리계획

○ 사업지구 실수요입주(예정)기업 18개사중 (주)헵스캠(1개사, 8톤/일)을 제외하고는 폐수발생업체(17개사)는 없어 폐수발생량이 미비하여 개별기업이 전량위탁처리 함.

나. 오수처리계획

○ 사업지구내 발생오수는 단지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후, 저류지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

구 분	인구	오수원단위(일최대)+ 지하수(5%)	오수발생량(㎥/일)
사업지구	392	330 L	≒136

주) 오수발생량은 「화성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2019.5)」 상의 오수원단위(330L)를 적용하여 산정

다. 오·폐수처리계획

구 분	수요량(㎥/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44.0	-	144.0	
오수발생량	136.0	-	136.0	· 단지내 오수처리시설에서 처리
폐수발생량	8.0	-	8.0	· 전량 위탁처리((주)헵스캠 1개사)

9) 수질오염방지시설

○ 사업지구내 발생오수는 단지내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후, 저류지를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방류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오수처리장	팔탄면 덕우리 산66-2번지 일원	405.8	-	405.8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10) 폐기물처리계획

- 본 사업의 운영시 생활폐기물 45.8ton/년, 배출시설계 폐기물 3,509.3ton/일, 지정폐기물 99.5ton/일로써 총 3,654.6ton/일의 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화성시 내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처리토록 계획

구 분	계획인원 (인) 변경	원단위 (kg/일·인)	폐기물 발생량	
			kg/일	ton/년
계		-	10,012.7	3,654.6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392	0.3203	125.6	45.8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5.2479	2,057.2	750.9
		19.2788	7,557.3	2,758.4
지정폐기물		0.6957	272.7	99.5

11) 통신시설계획

- (주)KT와 협의하여 공급

구 분	원 단 위	규 모 (㎡)	수요량 (회선)	비 고
계	-		139	
산업시설공간	0.01회선/10㎡	78,887.5	79	
지원시설공간	0.2회선/10㎡	2,984.3	60	

12) 전력사용계획

- 전력사용량 산정

구 분	면적 (㎡)	단위 표준부하 (VA/㎡)	적용부하(VA)	수용률 (%)	전력사용량(MWh/년)	
계	121,212.1	-	-	-	52,927	
산업시설	78,887.5	100	7,888,750	73	50,447	
지원시설	2,984.3	110	328,273	80	2,301	
공공 시설	소계	39,340.3	-	-	-	-
	공원	2,254.2	-	-	-	-
	녹지	5,469.5	-	-	-	-
	주차장	747.6	-	-	-	-
	도로	18,052.0	0.5	9,026	50	40
	오수처리시설	405.8	19	7,710	60	41
	전기공급설비	10,517.9	-	-	-	-
	유수지	1,893.3	10	18,933	60	100

○ 최대전력부하 및 설비용량 산정

구 분	최대부하(kW)	설비용량(kVA)	비 고
계	8,044	6,386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공급
산업시설	7,678	6,143	
지원시설	328	219	
공공시설	37	25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지원시설계획(변경없음)

- 실수요자에 의한 민간개발사업방식으로서 보상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전체를 자기자본(자체자금, 용자자금 등)으로서 조달토록 계획

8.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관리처분계획	귀속여부	
계	121,212.1	100.0	-		
산업시설용지	78,887.5	65.1	실수요자 분양		
지원시설용지	2,984.3	2.4	실수요자 분양		
공공시설 용지	소계	39,340.3	33.5	-	
	주차장	747.6	0.6	실수요자 분양	
	도로	18,052.0	14.9	지자체 무상귀속	무상귀속
	오수처리시설	405.8	0.3	실수요자 분양(자체관리)	
	전기공급설비	10,517.9	8.7	실수요자 분양(자체관리)	
	유수지	1,893.3	1.6	지자체 무상귀속	무상귀속
	공원	2,254.2	1.9	지자체 무상귀속	무상귀속
	녹지	5,469.5	4.5	지자체 무상귀속	무상귀속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관리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변경)
[기정]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권리 관계	
							권리 종류	성명
1	44-5	답	42	42	안정심 외 1인	-	지상권 근저당	남양농협협동조합
2	44-6	답	1	1	안정심 외 1인	-	지상권 근저당	남양농협협동조합
3	44-7	답	12	12	안정심 외 1인	-	지상권 근저당	남양농협협동조합
4	44-8	답	1	1	안정심 외 1인	-	지상권 근저당	남양농협협동조합
5	44-9	답	1,623	1,623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6	45-1	답	3,015	3,015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7	45-2	답	1,269	1,269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8	46-7	임	94	94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9	46-18	주	185	185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0	46-19	임	260	26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11	46-25	대	20	2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2	46-26	대	3	3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3	46-29	주	99	99	케이에이치에너지주식회사	-	근저당	에스케이가스주식회사
14	46-30	주	137	137	신한자산신탁	-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에스케이가스주식회사
					케이에이치에너지주식회사	-	근저당	에스케이가스주식회사
15	46-31	주	1	1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16	47	답	2,083	2,083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7	48	답	2,691	2,691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8	49	목	1,455	1,455	황대영	-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근저당	팔탄농협협동조합
19	50	전	741	741	황대영	-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근저당	팔탄농협협동조합
20	51-2	답	1,012	1,012	황대영	-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근저당	팔탄농협협동조합
21	84-38	임	758	758	황대영	-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	지상권 근저당	팔탄농협협동조합
22	299	구	380	38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23	300-5	구	680	68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24	산37	임	13,190	13,19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25	산66-2	임	86,121	86,121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6	산66-3	임	1,785	1,785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7	산66-4	임	1,785	1,785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28	산66-7	임	320	32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9	산66-8	임	876	876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30	산66-9	임	79	79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31	산88	구	266	266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합계			130,377	120,984				

[변경]

구분	지번	지목	지적(㎡)	편입(㎡)	소유자		권리 관계	
							권리종류	성명
1	44-5	답	42	42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2	44-6	답	1	1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3	44-7	답	12	12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4	44-8	답	1	1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5	44-9	답	1,623	1,623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6	45-1	답	3,015	3,015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7	45-2	답	1,269	1,269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8	46-7	임	94	94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9	46-18	주	185	185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0	46-19	임	260	26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11	46-25	대	20	2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2	46-26	대	3	3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3	46-29	주	99	99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4	46-30	주	137	137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15	46-31	주	1	1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16	47	답	2,083	2,083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17	48	답	2,691	2,691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18	49	목	1,455	1,455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19	50	전	741	741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0	51-2	답	1,012	1,012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1	84-38	임	758	758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2	299	구	380	38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23	300-5	구	680	68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24	산37	임	13,190	13,19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25	산66-2	임	86,121	86,121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6	산66-3	임	1,785	1,785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7	산66-4	임	1,785	1,785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28	산66-7	임	320	320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29	산66-8	임	876	876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30	산66-9	임	79	79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지상권	한국전력공사
31	산88	구	266	266	신한자산신탁	수탁자	-	-
합계			130,377	120,984				

[확정토지조서]

구분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확정면적(m ²)	비고
1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32	공장용지	2477.2	
2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33	공장용지	3673.6	
3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34	공장용지	2922.4	
4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35	대	811.3	
5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36	공원	275.5	
6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37	유지	526.6	
7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38	도로	1761.0	
8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39	공장용지	3168.1	
9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0	공장용지	2415.9	
10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1	공장용지	5685.6	
11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2	공장용지	6981.9	
12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3	공원	869.2	
13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4	공장용지	7468.3	
14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5	도로	13406.7	
15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6	유지	1366.7	
16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7	잡종지	405.8	
17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8	공장용지	2556.3	
18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49	공장용지	4757.8	
19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0	공원	948.5	
20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1	잡종지	5762.9	
21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2	임야	4755.0	
22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3	공원	2254.2	
23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4	주차장	747.6	
24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5	대	2173.0	
25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6	공원	1027.6	
26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7	공장용지	2332.1	
27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8	공장용지	3584.7	
28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59	공장용지	2330.5	
29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0	공장용지	2428.4	
30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1	공장용지	3240.8	
31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2	공장용지	2653.5	
32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3	도로	2884.3	
33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4	공장용지	2691.0	
34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5	공장용지	3181.8	
35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6	공장용지	3849.8	
36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7	공장용지	3855.5	
37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8	공장용지	6632.3	
38	화성시 팔탄면 덕우리	369	공원	2348.7	
합계				121,212.1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116	국도 82호선	중로 2-2호선	일반도로	지원시설 용지1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기정	중로	2	2	15	국지도로	850	덕우리 178-14번지 일원	중로 2-3호선	일반도로	전기공급 설비1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기정	중로	2	3	15	국지도로	195	중로 2-2호선	덕우리 362번지	일반도로	문화공원1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노외주차장	팔탄면 덕우리 354번지	747.6	-	747.6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나) 공간시설

(1) 공원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	1	동방산단 공원	문화공원	팔탄면 덕우리 산66-2번지 일원	팔탄면 덕우리 353번지	2,261	감) 6.8	2,254.2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 공원조성계획 총괄표

구분	주요시설내용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254.2	-	2,254.2	100.0	
시설부지		480.0	-	480.0	21.3	시설율 21.3%
진입광장 및 산책로	진입광장 및 산책로	355.0	-	355.0	15.7	
휴양시설	휴게쉼터	125.0	-	125.0	5.5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	-	-	-	6기
녹지 및 기타		1,774.2	-	1,774.2	78.7	녹지율 78.7%

○ 공원조성계획 결정 조서

시설명	세부시설	구분	기호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계		-		2,254.2	100.0	
시설면적		-		480.0	21.3	시설율 21.3%
진입광장 및 산책로	진입광장, 산책로	기정	가	355.0	15.7	
		소 계				
휴양시설	휴게쉼터	기정	나	125.0	5.5	
		소 계				
운동시설	생활체육시설	기정	다	-	-	6기
		소 계				
녹지	녹지대	기정	라	1,778.2	78.7	녹지율 78.7%
		소 계				

(2) 녹지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5,469.5	-	5,469.5	-	
-	1	1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36번지 일원	275.5	-	275.5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	2	2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69번지 일원	2,348.7	-	2,348.7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	3	3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56번지 일원	1,027.6	-	1,027.6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	4	4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43번지 일원	869.2	-	869.2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	5	5호녹지	완충녹지	덕우리 350번지 일원	948.5	-	948.5	화성시고시 제2024-115호 (2024.2.28.)	

(다) 방재시설

(1) 유수지

□ 유수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888	증)5.3	1,893.3		
-	1	유수지	저류시설 (지하저류조)	팔탄면 덕우리 산66-4번지 일원	팔탄면 덕우리 346번지	1,065	증)1.7	1,366.7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	2	유수지	저류시설 (지하저류조)	팔탄면 덕우리 300-5번지 일원	팔탄면 덕우리 337번지	523	증)3.6	526.6	화성시고시 제2017-54호 (2017.2.1.)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산업시설용지

구 분	면적(m ²)	산업시설용지		업체명	비 고
		번 호	면 적(m ²)		
계	78,887.5	-	78,887.5		
산업1	9,073.2	①	2,922.4	신우정밀	인접한 동일업종 간 분할 및 합병가능
		②	3,673.6	모터라인	
		③	2,477.2	(주)뉴스타자동차	
산업2	25,719.8	①	3,168.1	두잇식품소재개발	인접한 동일업종 간 분할 및 합병가능
		②	2,415.9	필텍	
		③	5,685.6	대룡공업(주)	
		④	6,981.9	(주)동방이앤씨-3	
		⑤	7,468.3	(주)헵스캠	
산업3	36,780.4	①	2,691.0	공신공업(주)	인접한 동일업종 간 분할 및 합병가능
		②	3,181.8	광명씨텍	
		③	3,849.8	세광에드캠	
		④	3,855.5	하나이앤씨	
		⑤	6,632.3	(주)세방	
		⑥	2,653.5	태경산업	
		⑦	3,240.8	(주)정도마이크로	
		⑧	2,428.4	(주)동방이앤씨-2	
		⑨	2,330.5	(주)동방이앤씨-1	
		⑩	3,584.7	(주)엠케이디와이-1	
		⑪	2,332.1	(주)엠케이디와이-2	
산업4	7,314.1	①	4,757.8	(주)성지테크	인접한 동일업종 간 분할 및 합병가능
		②	2,556.3	(주)유압사랑	

2) 지원시설용지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3,009	2,984.3	-	-	2,984.3	
지원1	833	811.3	①	팔탄면 덕우리 335번지	811.3	-
지원2	2,176	2,173.0	②	팔탄면 덕우리 355번지	2,173.0	-

3) 주차장용지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 고
	기 정	변 경	획지번호	위 치	면적(m ²)	
계	750	747.6	-	-	747.6	
주차	750	747.6	①	팔탄면 덕우리 354번지	747.6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1 ~ 산업4	산 업 시 설 용 지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집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로서, 산업단지관리계획 또는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상 업종배치계획에 따라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은 건축물 「산집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태양력 발전업(D35114)에 한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0% 이하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m 이하 																										
		배치 및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위치한 전면부는 전면에 면한 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 - 벽체담장 설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벽체담장의 전면부로 생울타리를 중복하여 조성 대지내 조경 설치구간은 완충기능을 위하여, 5m의 폭원으로 식재토록 함(본 구간내 담장설치 시, 펜스형식의 투시형 담장으로 설치) 송전선로 하단에 위치하는 획지내 건축물 건축시, 송전선로 영향권(폭원 12m, 이격거리:8m이상)밖에 설치 																										
		색 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명도</th> <th>채도</th> <th>색상</th> <th>적용색채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외벽</td> <td>주조색</td> <td>9~10</td> <td>1~2</td> <td>off-White</td> <td></td> </tr> <tr> <td>보조색</td> <td>6~7</td> <td>4~6</td> <td>7.5YR</td> <td></td> </tr> <tr> <td>강조색</td> <td>2~4</td> <td>5~8</td> <td>7.5YR</td> <td></td> </tr> <tr> <td>지붕</td> <td>2~4</td> <td>4~6</td> <td>7.5YR</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명도	채도	색상	적용색채예시	외벽	주조색	9~10	1~2	off-White		보조색	6~7	4~6	7.5YR		강조색	2~4	5~8	7.5YR		지붕	2~4	4~6	7.5YR	
		구 분	명도	채도	색상	적용색채예시																							
		외벽	주조색	9~10	1~2	off-White																							
			보조색	6~7	4~6	7.5YR																							
강조색	2~4		5~8	7.5YR																									
지붕	2~4	4~6	7.5YR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한계선 : 단지내 도로변 3m이상 																												

2) 지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2	지 원 시 설 용 지	용 도	허용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주택중 기숙사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고시원 제외)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 판매시설(해당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 운수시설 - 의료시설(격리병원 제외) - 노유자시설 - 교육연구시설 -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 「산집법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에 설치 가능하고, 태양력 발전업(D35114)에 한함.]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높 이	• 15m 이하																										
		배치 및 형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위치한 전면부는 전면도로를 향하도록 배치 • 도로와 면한 전면부는 담장설치를 배제하며, 이면부는 경계설정을 위한 담장설치 시, 1.0m이하의 투시형 담장 또는 생울타리로 조성 • 도로에 면한 건축물의 1층 전면부는 벽면적의 50%이상을 투시벽 또는 투시형 셔터로 설치 																										
		색 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명도</th> <th>채도</th> <th>색상</th> <th>적용색채예시</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외벽</td> <td>주조색</td> <td>9~10</td> <td>1~2</td> <td>off~White</td> <td></td> </tr> <tr> <td>보조색</td> <td>6~7</td> <td>4~6</td> <td>7.5YR</td> <td></td> </tr> <tr> <td>강조색</td> <td>2~4</td> <td>5~8</td> <td>7.5YR</td> <td></td> </tr> <tr> <td>지붕</td> <td>2~4</td> <td>4~6</td> <td>7.5YR</td> <td></td> </tr> </tbody> </table>	구 분	명도	채도	색상	적용색채예시	외벽	주조색	9~10	1~2	off~White		보조색	6~7	4~6	7.5YR		강조색	2~4	5~8	7.5YR		지붕	2~4	4~6	7.5YR	
		구 분	명도	채도	색상	적용색채예시																							
		외벽	주조색	9~10	1~2	off~White																							
			보조색	6~7	4~6	7.5YR																							
강조색	2~4		5~8	7.5YR																									
지붕	2~4	4~6	7.5YR																										
건축선	• 건축한계선 : 단지내 도로변 3m이상																												

3)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지원1 지원2	지 원 시 설 용 지	용 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 주차장법에 따른 다음의 시설 - 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노외주차장 및 부대시설 <p style="text-align: center;">〈부대시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1) 관리사무소,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및 자동차 장식품판매점 3) 노외주차장의 관리·운영상 필요한 편의시설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주차전용건축물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단,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에 설치 가능하고, 태양력 발전업(D35114)에 한함.]
			불허 용도
		배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선로 하단에 위치하는 획지내 건축물 건축시, 송전선로 영향권(폭원 12m, 이격거리:8m이상)밖에 설치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주차전용건축물 도입시)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주차전용건축물 도입시)
		높 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법에 따름(주차전용건축물 도입시)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건축한계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내 도로변 건축한계선(3m)에 의하여 설정되는 전면공지에는 건축물 및 담장 등의 고정식 장치물의 설치를 배제하며, 녹지 및 보도형태로 조성 	
고효율기기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업체의 간판 및 건축물내 등화는 고효율기기(LED램프 등)사용과 지붕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태양열)를 설치를 권장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량출입구는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출입구에 의한 보도단절구간 발생부는 과속방지포장 및 과속방지턱 등을 조성하여 보행안전성을 확보 • 교통성검토(교통개선방안)에서 제시된 사항 준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름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름 	지원시설 용지
공공시설에서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단,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에 설치 가능하고, 태양력 발전업(D35114)에 한함.] 	공공시설 용지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방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을 준용 	

화성시 고시 제2026-373호

하저 준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고시

화성시 고시 제2016-122(2016.3.30.)호 및 제2017-33(2017.1.19.)호, 제2018-203(2018.4.20.)호, 제2019-148(2019.4.1.)호, 제2019-369(2019.7.26.)호, 제2020-155(2020.4.6.)호, 제2021.-308(2021.4.22.)호, 제2021-920(2021.12.29.)호, 제2023-661(2023.8.17.)호, 제2024-18(2024.1.10.)호, 제2025-100(2025.2.10.)호로 승인·고시된 하저 준산업단지 지구지정 및 실시계획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및 제18조,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승인하고 내용을 고시합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 가. 명 칭 : 하저지구 준산업단지
- 나.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287-3번지 일원
- 다. 면 적 : 94,908.0㎡

2. 단지의 지정목적(변경 없음)

난개발된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산업기반시설 등의 정비를 통하여 기업환경과 주변자연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원가절감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주소·성명(변경 없음)

- 가. 주 소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287-3
- 나. 성 명 : 동아정밀 대표이사 배남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가. 개발기간 : 당초 - 2010. 06. 30. ~ 2025. 06. 30.
변경 - 2010. 06. 30. ~ 2026. 06. 30.

-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

•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변경)

1. 주요 유치업종(신규공장)

당 초	변 경	비 고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태양에너지발전설비(태양력발전업, D35114)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업종배치계획(신규공장)

구 분	면 적(m ²)			비 율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143	-	32,143	100.0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8 전기장비 제조업	27,432	-	27,432	85.3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4,711	-	4,711	14.7

※ 태양에너지발전설비(태양력발전업, D35114)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다. 주요 유치업종(기존공장)

당 초	변 경	비 고
C-10 음식료품 C-17 종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C-10 음식료품 C-17 종이제품 제조업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6 전자부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태양에너지발전설비(태양력발전업, D35114)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라. 업종배치계획(기존 공장)

구 분	면 적(m ²)			비 율 (%)
	기정	변경	변경후	
계	43,078	-	43,078	100.0
C-10음식료품	1,585	-	1,585	3.7
C-17 종이제품 제조업	2,705		2,705	6.3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1,972		1,972	4.6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17,297		17,297	40.1
C-26 전자부품 제조업	12,140		12,140	28.2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7,379		7,379	17.1

※ 태양에너지발전설비(태양력발전업, D35114)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없음)

구분		기정		변경 면적(m ²)	변경후	
		면적(m ²)	비율(%)		면적(m ²)	비율(%)
합계		94,908	100.00	-	94,908	100.00
산업용지	기존용지	43,078	45.39	-	43,078	45.39
	신규용지	32,143	33.87	-	32,143	33.87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기존)	1,653	1.74	-	1,653	1.74
공공시설 용지	도로(기존)	3,507	3.70	-	3,507	3.70
	도로(신규)	6,123	6.45	-	6,123	6.45
	주차장	631	0.66	-	631	0.66
	소공원	3,632	3.83	-	3,632	3.83
	수질오염방지시설	780	0.82	-	780	0.82
	저류지	2,196	2.31	-	2,196	2.31
	경관녹지	1,165	1.23	-	1,165	1.23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없음)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430	팔탄면 창곡리 산85-18	팔탄면 하저리 산6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21	팔탄면 울암리 산 11	팔탄면 하저리 287-5	일반 도로		

2) 소공원

소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소공원	울암리 산 11 일원	3,632	-	3,632		

3) 경관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관 녹지	하저리 산6-1일원	1,165	-	1,165		

4) 유수지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율암리 산6-1 일원	2,196	-	2,196		

5) 용수공급계획(변경 없음)

용수량 : 337m³/일(생활용수 35.5, 공업용수 301.5)

※ 화성시 상수도를 공급 받아 용수공급

6) 오·폐수처리계획(변경 없음)

- 오·폐수발생량 : 129.6m³/일(생활용수 29.6, 공업용수 100)

7) 폐기물처리계획(변경 없음)

- 폐기물발생량 : 변경 - 50.14 톤/일

- 처리 계획 : 지정폐기물 수거함을 지구내에 적절히 배치하여 분리수거할 계획 이며, 수거된 폐기물은 지자체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위탁처리토록 계획

8) 전력공급계획(변경 없음)

- 전력수요량 : 6,408 Mwh/년

- 공급계획 : 한국전력공사 화성지점과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

9) 통신공급계획 (변경 없음)

- 공급계획 : 한국통신 남양지점에서 공급계획

10) 에너지공급계획 (변경 없음)

- 공급계획 : (주)삼천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공급계획을 수립할 예정

7.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별첨(변경 없음)

8.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조서(변경 없음)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94,908.0	-	94,908.0	100.0	
계획관리지역	94,908.0	-	94,908.0	100.0	

※ 기정 면적은 하저준산업단지 지정고시(화성시 고시 제2025-100호 2025. 2. 10)면적임

나.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변경 없음)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 명	위치	면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하저 지구단위계획구역	화성시 팔탄면 하저리 287-3 일원	94,908.0	-	94,908.0	

※ 기정 면적은 하저준산업단지 지정고시(화성시 고시 제2025-100호 2025. 2. 10)면적임

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조서(변경 없음)

1) 토지이용계획 결정조서

구분		기정		변경 면적(㎡)	변경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합계		94,908	100.00	-	94,908	100.00
산업용지	기존용지	43,078	45.39	-	43,078	45.39
	신규용지	32,143	33.87	-	32,143	33.87
지원시설	근린생활시설(기존)	1,653	1.74	-	1,653	1.74
공공시설 용지	도로(기존)	3,507	3.70	-	3,507	3.70
	도로(신규)	6,123	6.45	-	6,123	6.45
	주차장	631	0.66	-	631	0.66
	소공원	3,632	3.83	-	3,632	3.83
	수질오염방지시설	780	0.82	-	780	0.82
	저류지	2,196	2.31	-	2,196	2.31
	경관녹지	1,165	1.23	-	1,165	1.23

라.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없음)

1) 도로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1	1	10	국지 도로	430	팔탄면 창곡리 산85-18	팔탄면 하저리 산6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21	팔탄면 울암리 산 11	팔탄면 하저리 287-5	일반 도로		

2) 소공원

소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소공원	율암리 산 11 일원	3,632	-	3,632		

3) 경관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경관 녹지	하저리 산6-1일원	1,165	-	1,165		

4) 유수지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수지	율암리 산6-1 일원	2,196	-	2,196		

마.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 가구 1(변경 없음)

도면 번호	획지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	1-1	2,705	팔탄면 하저리 287-12 일원	2,705	-	2,705	기존공장
-	1-2	2,706	팔탄면 하저리 287-16 일원	2,706	-	2,706	기존공장
	1-3	2,705	팔탄면 하저리 287-14 일원	2,705	-	2,705	기존공장
	1-4	2,002	팔탄면 하저리 287-4 일원	2,002	-	2,002	기존공장
	1-8	2,056	팔탄면 하저리 287-3 일원	2,056	-	2,056	기존공장
	1-9	7,974	팔탄면 하저리 287-1 일원	7,974	-	7,974	기존공장
	1-10	2,192	팔탄면 하저리 287-2 일원	2,192	-	2,192	기존공장
	계	22,340	-	22,340	-	22,340	-

• 가구 2(변경 없음)

도면 번호	획지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	2-1	2,196	팔탄면 울암리 산6-1 일원	2,196	-	2,196	저류시설
	2-2	780	팔탄면 울암리 산6-1 일원	780	-	780	오수처리시설
	2-3	2,131	팔탄면 울암리 산6-1 일원	2,131	-	2,131	신규공장
	2-4	2,580	팔탄면 울암리 산6-1 일원	2,580	-	2,580	신규공장
	2-5	2,706	팔탄면 하저리 287-17 일원	2,706	-	2,706	기존공장
	2-6	3,632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3,632	-	3,632	소공원
	2-7	2,575	팔탄면 하저리 287-18 일원	2,575	-	2,575	기존공장
	2-8	2,080	팔탄면 하저리 287-5 일원	2,080	-	2,080	기존공장
-	2-9	3,334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3,334	-	3,334	신규공장
	계	22,014		22,014	-	22,014	

• 가구 3(변경 없음)

도면 번호	획지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	3-1	2,323	팔탄면 하저리 287-6 일원	2,323	-	2,323	기존공장
-	3-2	1,972	팔탄면 하저리 287-7 일원	1,972	-	1,972	기존공장
-	3-3	1,585	팔탄면 하저리 287-8 일원	1,585	-	1,585	기존공장
-	3-4	2,504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2,504	-	2,504	신규공장
-	3-5	4,310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4,310	-	4,310	신규공장
	계	12,694	-	12,694	-	12,694	-

•가구 4(변경 없음)

도면 번호	획지번호	면적(m ²)	획지				비고
			위치	면적(m ²)			
				기정	변경	변경후	
-	4-1	1,165	팔탄면 울암리 산6-1 일원	1,165	-	1,165	경관녹지
-	4-2	5,593	팔탄면 울암리 산8 일원	5,593	-	5,593	신규공장
-	4-3	2,057	팔탄면 울암리 1 일원	2,057	-	2,057	신규공장
-	4-4	631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631	-	631	주차장
-	4-5	2,756	팔탄면 하저리 산11 일원	2,756	-	2,756	신규공장
-	4-6	2,799	팔탄면 하저리 산11 일원	2,799	-	2,799	신규공장
-	4-7	1,856	팔탄면 창곡리 693-10 일원	1,856	-	1,856	기존공장
-	4-8	1,490	팔탄면 창곡리 693-6 일원	1,490	-	1,490	기존공장
-	4-9	4,079	팔탄면 울암리 산8 일원	4,079	-	4,079	신규공장
-	4-10	1,653	팔탄면 창곡리 693-7 일원	1,653	-	1,653	기존근생
-	4-11	1,441	팔탄면 창곡리 693-4 일원	1,441	-	1,441	기존공장
-	4-12	2,710	팔탄면 창곡리 693-9 일원	2,710	-	2,710	기존공장
계		28,227	-	28,230	-	28,230	-

바.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조서 (변경)

1) 기존공장부지 (변경)

(가구 1-1~4, 1-7~1-10, 2-5, 2-7~2-8, 3-1~3-3, 4-7~4-8, 4-11~4-12)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단, 태양력 발전업(D35114)에 한하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신규공장부지 (변경)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m ²)	계획내용					
2	3	팔탄면 울암리 산6-1 일원	2,131	구분	계획내용				
	4	팔탄면 울암리 산6-1 일원	2,580						
	9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3,334						
3	4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2,504			허용 용도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의 공장 및 부대시설(관련법령에서 불허하는 경우 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 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지 설비’ 의 설치 [단, 태양력 발전업(D35114)에 한하 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규정을 준수하 여야 함.]		
	5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4,310						
4	2	팔탄면 울암리 산8 일원	5,593					용 도	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	팔탄면 울암리 1 일원	2,057						
	5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2,756						
	6	팔탄면 울암리 산11 일원	2,799						
	9	팔탄면 울암리 산8 일원	4,079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00% 이하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로부터 2m				
				높 이	· 4층(20m) 이하				

3) 근린생활시설용지 (변경)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m ²)	계획내용
4	10	팔탄면 창곡리 693-7 일원	1,653	· 기존 근린생활시설 존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의 설치 [단,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 에 설치 가능하고, 태양 력 발전업(D35114)에 한함.]

4) 공공시설용지(변경)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치	면적(m ²)	계획내용		
2	1	팔탄면 율암리 산6-1 일원	2,196	구분		
				용도	허용 용도	· 유수지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화성시 지침에 따름	
				용적률	· 화성시 지침에 따름	
				건축한계선	-	
				높 이	-	
2	2	팔탄면 율암리 산6-1 일원	780	구분		
				용도	허용 용도	· 수질오염방지시설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화성시 지침에 따름	
				용적률	· 화성시 지침에 따름	
				건축한계선	-	
				높 이	-	
2	6	팔탄면 율암리 산11 일원	3,632	소공원 조성		
4	1	팔탄면 율암리 산6-1 일원	1,165	경관녹지 조성		
	4	팔탄면 하저리 산11 일원	631	구분		
용도	허용 용도	· 주차장장법 제2조 1항에 따른 노외주 차장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통사항(공공시설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 단,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 에 설치 가능하고, 태양력 발전업(D35114)에 한함.

10.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시 기업정책과(031-5189-3715)에 비치하고 지형도면은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별첨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변경 없음)

토 지 조 서

연번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주소	비 고
				지적	기정	변경	변경후			
1	울암리	1	전	1,316	1,316	-	1,316	최*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 *** ***-***(**동 ****아파트)	확정측량 대상토지
2	울암리	산10	임	1,742	1,742	-	1,742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확정측량 대상토지
3	울암리	산11	임	19,267	19,267	-	19,267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확정측량 대상토지
4	울암리	산6-1	임	11,872	11,872	-	11,872	김**외 2인	성남시 분당구 ****로 ** ***-***(**동 ****)	확정측량 대상토지
5	울암리	산6-2	임	3	3	-	3	기획재정부		확정측량 대상토지
6	울암리	산8	임	7,835	7,835	-	7,835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확정측량 대상토지
7	울암리	산9	임	1,388	1,388	-	1,388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확정측량 대상토지
8	창곡리	693-10	장	1,223	1,223	-	1,223	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리 ***-**	
9	창곡리	693-11	장	43	43	-	43	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리 ***-**	
10	창곡리	693-12	도	636	636	-	636	이**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 **-**, ***동 ***호(****)	
11	창곡리	693-13	장	8	8	-	8	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리 ***-**	
12	창곡리	693-14	장	53	53	-	53	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리 ***-**	
13	창곡리	693-3	대	1,496	1,496	-	1,496	곽**	화성시 향남읍 ****로 **, ***동 ***호(향남****아파트)	확정측량 대상토지
14	창곡리	693-15	대	697	697	-	697	곽**	화성시 향남읍 ****로 **, ***동 ***호(향남****아파트)	
15	창곡리	693-4	장	1,441	1,441	-	1,441	(주)남****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 ***-**	
16	창곡리	693-6	장	1,394	1,394	-	1,394	은***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리 ***-**	
17	창곡리	693-7	대	1,653	1,653	-	1,653	김**외*인	화성시 팔탄면 *** ****	
18	창곡리	693-9	장	2,503	2,503	-	2,503	(주)진****	서울시 영등포구 **로 *** (***)가)	
19	창곡리	693	장	207	207	-	207	(주)진****	서울시 영등포구 **로 *** (***)가)	

연번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주소	비 고
				지적	기정	변경	변경후			
20	창곡리	산85-24	도	454	454	-	454	건설교통부		
21	창곡리	693-18	도	7	7	-	7	건설교통부		확정측량 대상토지
22	창곡리	산85-26	도	526	526	-	526	건설교통부		
23	창곡리	693-19	도	346	346	-	346	건설교통부		확정측량 대상토지
24	하저리	284	장	2,724	2,724	-	2,724	신***** (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길 **	
25	하저리	284-1	장	3,756	3,756	-	3,756	㈜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호(**동 ****리)	
26	하저리	284-3	도	198	198	-	198	㈜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호(**동 ****리)	
27	하저리	284-4	장	381	381	-	381	신***** (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길 **	
28	하저리	284-5	장	382	382	-	382	㈜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로 *** **호(**동 ****리)	
29	하저리	287-11	임	383	383	-	383	㈜선***** 외*인	화성시 남양읍 **로 ***-**	
30	하저리	287-12	장	2,705	2,705	-	2,705	송**	안양시 동안구 **로 ***번길 **-** ***-*** (**동 *****크)	
31	하저리	287-13	도	257	257	-	257	이**외*인	경기도 안양시 **구 박**동 ** 우성** ***-***	
32	하저리	287-14	장	2,705	2,705	-	2,705	이**	경기도 안양시 **구 *** ** **아파트 ***-***	
33	하저리	287-15	도	690	690	-	690	이** 외*인	경기도 안양시 **구 *** ** **아파트 ***-***	
34	하저리	287-16	장	1,353	1,353	-	1,353	(주)신양***** 점	서울특별시 **구 **동 ***-**	
35	하저리	287-17	장	2,706	2,706	-	2,706	한**	화성시 남양읍 **길***번길 ***-**	
36	하저리	287-18	장	2,575	2,575	-	2,575	금강**** (주)	경기도 수원시 **구 **동 ***-** 상가 ***호	
37	하저리	287-19	장	794	794	-	794	㈜우***	화성시 봉담읍 **리 ***-*	

연번	행정 구역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주소	비 고
				지적	기정	변경	변경후			
38	하저리	287-20	임	871	871	-	871	아시아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416 13층(대치동 케이티엔지타워)	확정측량 대상토지
39	하저리	287-21	장	533	533	-	533	신****(주)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길 **	
40	하저리	287-23	장	1,353	1,353	-	1,353	신****(주)	경기도 화성시 **면 **로 ****-**	
41	하저리	287-24	장	538	538	-	538	박**	경기도 군포시 **동 ***-* ** **아파트 ***-***	
42	하저리	287-25	장	32	32	-	32	박**	경기도 군포시 **동 ***-* ** **아파트 ***-***	
43	하저리	287-2	장	2,192	2,192	-	2,192	(주)기**	경기도 화성시 **읍 **로 *** *동	
44	하저리	287-3	장	1,924	1,924	-	1,924	배**	경기도 안양시 **구 **동 **** **아파트 ***-****	
45	하저리	287-4	장	1,751	1,751	-	1,751	(주)선****	화성시 남양읍 **로 ***-**	
46	하저리	287-5	장	1,315	1,315	-	1,315	(주)우***	화성시 봉담읍 **리 ***-*	지적분할 대상토지
47	하저리	287-6	장	2,325	2,325	-	2,325	박**	경기도 군포시 **동 *** **아파트 ***-***	지적분할 대상토지
48	하저리	287-7	장	1,972	1,972	-	1,972	(주)대**	경기도 화성시 **면 **로 ***-**	
49	하저리	287-8	장	1,585	1,585	-	1,585	이**	서울특별시 **구 **동 ***-* ****라 ***-***	
50	하저리	287-9	도	798	798	-	798	최**외*		
합 계				94,908	94,908	-	94,908			

화성시 고시 제2026-377호

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

화성시 동탄구 목동 478-1번지 일원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10-430호(2010. 7. 7.)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개요

- 가. 위 치 : 화성시 동탄구 목동 478-1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 명 칭 : 목동공원 맨발산책로 조성공사
-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	목동공원	근린공원	목동 478-1	95,991.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430호 (2010. 7. 7.)	
시행	-	목동공원	근린공원	목동 478-1	302.0	-	

○ 실시계획 사유서

구 분	시설명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	목동공원	• 시행면적 A = 302.0㎡	• 맨발산책로 조성	

-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8길 6 1층(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 성명 : 화성시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 동부공원관리과(031-5189-3294),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031-5189-61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합 계		1필지		56,437.3	302.0			
1	화성시 동탄구 목동	478-1	공원	56,437.3	302.0	화성시	-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건

[목동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개요

사업명칭	목동공원 맨발산책로 조성공사
사업위치	화성시 동탄구 목동 478-1번지 일원
사업규모	A = 302.0㎡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동탄대로8길 6 1층 성명 : 화성시장(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동부공원관리과)

-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 지목변경 및 합필, 산지복구준공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예정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고시 제2026-378호

고 시 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2010. 7. 7.)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동탄 구봉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2.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붙임
3. 열람장소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4. 문의사항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6122)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개요

화성시 동탄구 목동 478-1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목동공원 내 맨발산책로 조성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하고자 함.

2. 공원현황

시설 구분	공원명	위 치	결정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근린공원	목동공원	화성시 동탄구 목동 478-1번지 일원	95,991.7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30호 (2010. 7. 7.)	

3. 공원조성 결정 조서

가. 공원조성 결정 총괄조서

구 분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구성비			
				바닥(㎡)		연(㎡)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총 계	95,991.7	95,991.7	-	296.5	296.5	296.5	296.5	416	417	증)1	100	100	-	
시설계	시설계	23,546.52	23,546.52	-					416	417	증)1	24.53	24.53	-
	기 반 시 설	소계	14,022.28	14,022.28	-							14.61	14.61	-
		도로	11,462.38	11,462.38	-							11.94	11.94	-
		자전거 도로	663.8	663.8	-							0.69	0.69	-
		광장	1,896.1	1,896.1	-							1.98	1.98	-
		조경시설	4,321.4	4,321.4	-					20	20		4.50	4.50
	휴양시설	87.24	87.24	-					58	58		0.09	0.09	-
	운동시설	4,149.1	4,149.1	-					15	15		4.32	4.32	-
	편익시설	269.0	269.0	-								0.28	0.28	-
	관리시설	296.5	296.5	-	296.5	296.5	296.5	296.5	323	324	증)1	0.31	0.31	-
	그밖의시설	401.0	401.0	-								0.42	0.42	-
	녹지 및 기타	72,445.18	72,445.18	-								75.47	75.47	-

구분	번호	시 설 명	부지면적(m ²)			규모/수량			구성비			건축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증감	바닥면적(m ²)		연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⑦	야외테이블				2	2	-									
	⑧	방재형벤치A				4	4	-									
	⑨	방재형벤치B				1	1	-									
	⑩	화덕벤치				1	1	-									
	⑪	흔들그네				5	5	-									
미소 아리랑	소 계		4,149.1	4,149.1	-	15	15	-	4.32	4.32	-						
	4-1	운동장 (축구장)	4,034.3	4,034.3													
	4-2	운동마당	114.8	114.8													
	⑫	철봉, 평행봉				3	3	-									
	⑬	체력단력시설 6종				12	12	-	0.28	0.28	-						
편의 시설	소 계		269.0	269.0													
	5-1	주차장	269.0	269.0													
관 리 시 설	소 계		296.5	296.5		323	324	증)1				296.5	296.5	296.5	296.5		
	6-1	건축물	296.5	296.5								296.5	296.5	296.5	296.5		
	⑭	음수대				1	1										
	⑮	비구방지웬스				33	33										
	⑯	웬스				110	110										
	⑰	오벨리스크				1	1										
	⑱	안전난간				174	174										
	⑲	CCTV				4	4										
	⑳	세족장				-	1	증)1									
그 밖 의 시 설	소 계		401.0	401.0					0.42	0.42	-						
	7-1	향토문화재	401.0	401.0													
녹지 및 기타	소 계		72,445.18	72,445.18	-												
		녹지	72,445.18	72,445.18	-				75.47	75.47	-						

다.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유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합 계)					3001.2	11,462.38				
변경(합 계)					3001.2	11,462.38				
기정	소로	3	1	6.0	443.8	2662.80	진입로	동탄순환대로20길	진입광장1-1	
기정	소로	3	2	3.0	30.0	90.00	진입로	남서측구역계 동탄순환대로	소로3-3	
기정	소로	3	3	4.0	80.1	320.40	연결로	소로3-1	소로3-1	
기정	소로	3	4	2.0	73.2	146.40	연결로	소로3-5	계류2-18	
기정	소로	3	5	3.0	46.5	139.50	진입로	서측구역계 목동초등학교	소로3-1	
기정	소로	3	6	3.0	43.7	131.10	진입로	동탄순환대로20길	소로3-1	
기정	소로	3	7	2.5	72.3	180.70	진입로	동탄순환대로20길	소로3-1	
기정	소로	3	8	2.0	68.1	136.20	연결로	소로3-9	소로3-1	
기정	소로	3	9	2.0	126.3	252.60	진입로	동탄순환대로20길	소로3-1	
기정	소로	3	10	2.0	19.0	38.00	연결로	소로3-11	스카이데크	
기정	소로	3	11	4.0	31.2	124.80	진입로	목동중학교	소로3-13	
기정	소로	3	12	2.0	37.6	75.20	연결로	소로3-11	소로3-13	
기정	소로	3	13	2.0	86.1	172.20	연결로	소로3-15	소로3-1	
기정	소로	3	14	2.0	44.2	88.40	연결로	소로3-13	소로3-15	
기정	소로	3	15	3.5	81.0	283.50	진입로	남측구역계 보행자전용도로	소로3-1	
기정	소로	3	16	4.0	165.0	882.52	진입로	남측구역계 동탄순환대로20길	소로3-17	
기정	소로	3	17	4.0	157.3	689.30	연결로	소로3-16	동측구역계(용구대로 하부 보행터널)	
기정	소로	3	18	4.0	459.3	1835.60	연결로	소로3-17	소로3-19	
기정	소로	3	19	4.0	76.6	306.40	연결로	소로3-20	북측구역계	
기정	소로	3	20	2.0	49.3	107.20	연결로	소로3-19	소로3-24	
기정	소로	3	21	4.0	295.0	1216.36	진입로	동탄순환대로20길	소로3-22	
기정	소로	3	22	4.0	141.6	634.50	연결로	소로3-21	북측구역계	
기정	소로	3	23	5.0	5.5	27.50	연결로	소로3-22	향토문화재	
기정	소로	3	24	2.5	368.5	921.20	연결로	동탄순환대로20길	소로3-20	

제19호 근린공원 시설결정도

S=1:800(A3=1:1,600)

변경



※ 427 면적



※ 시설분류

시설구분	시설명	면적(㎡)	단위	비고	
공용주차장	소형	420.1	㎡		
	대형	23,843.2	㎡	시정비율 24.5%	
	합계	24,263.3	㎡		
운동시설	소형	1,402.28	㎡		
	대형	11,402.28	㎡		
	합계	12,804.56	㎡		
	2-1	체육공원(1)	21.3	㎡	
	2-2	체육공원(2)	16.8	㎡	
	2-3	체육공원(3)	17.3	㎡	
	2-4	체육공원(4)	28.7	㎡	
	2-5	축구(축구공원)	1,300.0	㎡	
	2-6	축구(축구공원)	80.0	㎡	소수점처리
	2-7-1	경기장	8	㎡	800.0
2-11-1	축구(축구공원)	8	㎡	168.0	
2-17	야구장	1	㎡	7,000.0	
2-18	야구장	1	㎡	2,000.0	
2-19	야구장	1	㎡	30.0	
2-20	야구장	1	㎡	100.0	
2-21	야구장	1	㎡	100.0	
2-22	야구장	1	㎡	-	
2-23	야구장	1	㎡	-	
휴식시설	소형	1,072.0	㎡	시정비율 11.0%	
	대형	1,072.0	㎡		
	합계	2,144.0	㎡		
	3-1	야구장	1	㎡	-
	3-2	야구장	1	㎡	-
	3-3	야구장	1	㎡	-
	3-4	야구장	1	㎡	-
	3-5	야구장	1	㎡	-
	3-6	야구장	1	㎡	-
	3-7	야구장	1	㎡	-
문화시설	소형	4,000.0	㎡	시정비율 4.0%	
	대형	1,168.0	㎡		
	합계	5,168.0	㎡		
	4-1	문화(문화공원)	12	㎡	3,000.0
편의시설	소형	3,000.0	㎡		
	대형	3,000.0	㎡		
	합계	6,000.0	㎡		
	5-1	편의(편의시설)	1	㎡	3,000.0
관리시설	소형	3,000.0	㎡		
	대형	3,000.0	㎡		
	합계	6,000.0	㎡		
	6-1	관리(관리시설)	1	㎡	3,000.0
	6-2	관리(관리시설)	1	㎡	3,000.0
	6-3	관리(관리시설)	1	㎡	3,000.0
기타시설	소형	40.0	㎡	시정비율	
	대형	2,000.0	㎡	20.0%	

동탄(1)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체육시설) 실시계획(변경) 작성 고시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48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따라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합니다.

2025. 3. 27.

화 성 시 장

1.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개요

가. 위치 :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48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체육시설)

○ 명 칭 :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실시계획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46	주차장46호	석우동 590-20	36,968.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23호 (2020.06.02.)	
시행	46	주차장46호	석우동 648	6,726	-	부분시 행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실시계획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결정	1	체육시설	석우동 648	36,968.2	화성시고시 제2025-669호 (2025.08.12.)	
시행	1	체육시설	석우동 648	12,522	-	부분 시행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체육시설) 실시계획 사유서

시설명	위 치	인가사항	인가 사유서	비고
주차장	석우동 648	• 실시계획인가 면적 - 주차장 6,726m ²	• 주차장부지 조성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함.	
체육시설	석우동 648	• 실시계획인가 면적 - 축구장 12,522m ²	• 축구장 및 부대시설 조성을 위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득하고자 함.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법인의 명칭 : 화성시장(전국체전추진단)

○ 법인 소재지 : 경기도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159

○ 대표자 성명 : 정명근

○ 대표자 주소 : 경기도 만세구 남양읍 시청로159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사업인가일로부터 ~ 2028. 2. 28.

○ 준공예정일 : 2028. 2. 28.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 붙임

1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기정)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편입	성명	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관계	
소 계				36,968.2	19,248.0							
1	화성시 석우동	648	주	36,968.2	19,248.0	화성시	공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조건

-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 -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개요

사업명칭	석우동 축구장 건립공사
사업위치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48번지
사업규모	주차장, 체육시설 19,248㎡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남양읍 159 성명 : 화성시장(전국체전추진단)
사업기간	인가일로부터 2028. 2. 28.까지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조건

- 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과 관련하여 기 협의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부서(기관)의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의 추진에 따른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가 필요한 사항은 관계규정에 따라 이행 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민·형사상 포함)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6조,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법 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 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 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은 무상귀속대상으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준공신청 전(약3개월 전) 무상귀속 시설물에 대한 인수인계서(인수인계조서, 설계도서 등(관련 서류는 실무부서와 협의))을 구비하여 무상귀속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의거 아래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준공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완료보고서 [별지 제10호서식]
- 나. 준공도서
- 다. 설계도서
- 라. 관련부서(기관)협의의견에 대한 이행사항
- 마. 각 실과소 무상귀속시설물 인수인계 완료 공문(도로시설, 녹지, 공공공지 시설 등)
- 바. 무상귀속 시설물 인수인계조서(도로시설, 녹지, 공공공지 등)
- 사. 무상귀속 시설물(도로, 녹지, 공공공지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 서류
- 아. 지목변경 및 합병 신청서

※ 구비서류 일체 CD 제출요망

■ 붙임 : 관련부서(기관)협의의견 조치계획

화성시 고시 제2026-380호

도시관리계획[공원:문화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54번지 일원에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93호(2021. 12. 24.)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54번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문화공원]

○ 명 칭 :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	동탄 패밀리폴	문화공원	석우동 654	74,24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93호 (2021. 12. 24.)	
시행	-	동탄 패밀리폴	문화공원	석우동 654	200.0	-	

○ 실시계획 사유서

구 분	시설명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	동탄 패밀리폴	• 시행면적 A = 200.0m ²	•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활용 시설물 설치 (그레이팅가든, 등의자 등)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1층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 성명 : 화성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불입”**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 보타닉가든추진단(031-5189-7176,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031-5189-61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불입(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연 번	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명	주소	
합 계		1필지		74,242.1	74,242.1			
1	화성시 석우동	590-77	공원	74,242.1	74,242.1	화성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건

[동탄 패밀리폴]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개요

사업명칭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사업위치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54번지
사업규모	A = 200.0㎡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1층 성명 : 화성시장(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 지목변경 및 합필, 산지복구준공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예정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고시 제2026-381호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93호(2021. 12. 24.)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동탄 패밀리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2.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붙임
3. 열람장소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4. 문의사항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6122)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개요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54번지 일원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동탄 패밀리폴 내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하고자 함.

2. 공원현황

시설 구분	공원명	위 치	결정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문화공원	동탄 패밀리폴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654번지	74,24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393호 (2021. 12. 24.)	

3. 공원조성 결정 조서

가. 공원조성 결정 총괄조서

구 분	시설면적(㎡)		건축면적(㎡)				공작물(기)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바닥		연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74,242.1	74,242.1	438.0	438.0	846.32	846.32	35	41	100	100		
시설계	23,869.0	23,869.0					35	41	32.2	32.2		
시설	기 반 시 설	소계	13,257.4	13,257.4				4	4	17.9	17.9	
		도로	4,410.4	4,410.4								
		광장	5,847.0	5,847.0								
	조경시설	586.2	586.2					6	0.8	0.8		
	휴양시설	4,388.4	4,388.4					24	24	5.9	5.9	
	유희시설											
	운동시설	5,199.0	5,199.0					6	6	7.0	7.0	
	교양시설											
	편익시설	438.0	438.0					1	1	0.6	0.6	
	관리시설											
녹지 및 기타	50,373.1	50,373.1							67.8	67.8		

다.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합계					2,850.0	7,410.4				
신설	소로	3류	1	4.0	77.0	310.0	보도	새롭교	광장-3	
신설	소로	3류	2	2.0	97.0	196.0	보도	소로3-7	소로3-9	
신설	소로	3류	3	3.0~7.0	72.0	433.0	보도	소로3-4	광장-3	
신설	소로	3류	4	2.0	15.0	30.0	보도	소로3-7	수경시설-3	
신설	소로	3류	5	3.0	113.0	362.0	보도	소로3-4	소로3-6	
신설	소로	3류	6	3.0~7.0	114.0	408.0	보도	소로3-5	휴게쉼터-4	
신설	소로	3류	7	3.5	337.0	1,195.0	보도	남측경계	북측경계	
신설	소로	3류	8	3.0	33.0	100.0	보도	소로3-7	광장-4	
신설	소로	3류	9	3.0	26.0	78.0	보도	소로3-1	광장-3	
신설	소로	3류	10	3.0	108.0	325.0	보도	광장-4	광장-3	
신설	소로	3류	11	3.0	210.0	630.0	보도	광장-4	광장-5	
신설	소로	3류	12	3.0	17.0	54.0	보도	강변전망 마루	소로3-1	
신설	소로	3류	13	2.0	5.0	10.0	보도	소로3-1	소로3-2	
신설	소로	3류	14	1.0	17.0	14.0	보도	녹지	북측경계	
신설	소로	3류	15	1.5	7.0	11.0	보도	광장-7	수경시설	
신설	소로	3류	16	1.2	33.0	40.0	보도	소로3-13	서측경계	
신설	소로	3류	17	1.5	1.0	1.5	보도	서측경계	녹지	
신설	소로	3류	18	1.5	1.0	1.5	보도	녹지	녹지	
신설	소로	3류	19	1.5	10.0	15.0	보도	동측경계	서측경계	
신설	소로	3류	20	1.5	2.5	4.0	보도	동측경계	녹지	
신설	소로	3류	21	1.5	3.0	4.5	보도	소로3-7	녹지	
신설	소로	3류	22	1.2	49.0	58.0	보도	휴게쉼터- 2	서측경계	
신설	소로	3류	23	1.2	92.0	110.0	보도	서측경계	서측경계	
신설	소로	3류	24	1.2	33.0	40.0	보도	남측경계	서측경계	
신설	소로	3류	25	3.0	2.0	6.0	보도	소로3-7	광장-11	
신설	소로	3류	26	1.2	68.0	81.0	보도	북측경계	소로3-27	2-3단계
신설	소로	3류	27	1.5	2.0	3.0	보도	녹지	소로3-27	2-3단계
신설	소로	3류	28	1.5	8.0	12.0	보도	녹지	소로3-27	2-3단계
신설	소로	3류	29	2.0	20.0	40.0	보도	서측경계	동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30	2.0	16.0	32.0	보도	소로3-27	소로3-31	2-3단계
신설	소로	3류	31	1.5	18.0	27.0	보도	소로3-27	소로3-31	2-3단계
신설	소로	3류	32	1.5	17.0	25.5	보도	소로3-27	소로3-31	2-3단계
신설	소로	3류	33	2.0	12.0	24.0	보도	서측경계	녹지	2-3단계
신설	소로	3류	34	2.0	40.0	80.0	보도	소로3-31	녹지	2-3단계
신설	소로	3류	35	1.5	22.0	33.0	보도	소로3-31	소로3-32	2-3단계
신설	소로	3류	36	1.5	40.0	60.0	보도	소로3-31	소로3-32	2-3단계
신설	소로	3류	37	2.0	2.5	5.0	보도	소로3-34	소로3-33	2-3단계
신설	소로	3류	38	1.5	9.0	13.5	보도	소로3-37	소로3-34	2-3단계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신설	소로	3류	39	1.5	10.0	15.0	보도	녹지	소로3-38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0	1.5	78.0	117.0	보도	동측경계	광장-12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1	1.5~2.0	15.0	25.5	보도	서측경계	소로3-40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2	2.0	10.0	20.0	보도	서측경계	광장-12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3	1.5	58.0	87.0	보도	소로3-40	소로3-43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4	2.0	5.0	10.0	보도	서측경계	소로3-41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5	2.0	5.0	10.0	보도	서측경계	소로3-41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6	2.0	17.0	34.0	보도	서측경계	동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7	3.0	16.0	48.0	보도	서측경계	남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8	3.5	22.0	77.0	보도	동측경계	남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49	3.0	20.0	60.0	보도	서측경계	북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0	3.0	31.0	93.0	보도	동측경계	북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1	3.5	75.0	262.0	보도	남측경계	동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2	2.0	54.0	108.0	보도	남측경계	서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3	3.5	62.0	217.0	보도	동측경계	북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4	2.0	23.0	46.0	보도	서측경계	북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5	3.0	4.0	12.0	보도	소로3-55	녹지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6	3.0	12.0	36.0	보도	동측경계	녹지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7	1.2	387.0	464.0	보도	북측경계	소로3-56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8	3.0	12.0	36.0	보도	서측경계	녹지	2-3단계
신설	소로	3류	59	3	12.0	36.0	보도	동측경계	녹지	2-3단계
신설	소로	3류	60	7.0	32.0	224.0	보도	서측경계	동측경계	2-3단계
신설	소로	3류	61	4.0	47.0	219.1	보도	중 (국)1-16	저류지	2-2단계
신설	소로	3류	62	3.0	94.0	281.30	보도	소로3-61	저류지 북측경계	2-2단계

화성시 고시 제2026-382호

도시관리계획[공원:근린공원] 실시계획 작성·고시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45번지에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98호(2002. 12. 26.)호로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 작성하고,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실시계획(변경) 개요

가. 위 치 :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45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공원:근린공원]

○ 명 칭 :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다.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결정	-	큰재봉공원	근린공원	석우동 45	256,284.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98호 (2002. 12. 26.)	
시행	-	큰재봉공원	근린공원	석우동 45	100.0	-	

○ 실시계획 사유서

구 분	시설명	내 용	사 유	비 고
변경	큰재봉공원	• 시행면적 A = 100.0m ²	•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활용 시설물 설치 (피크닉테이블, 그루터기 등)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1층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 성명 : 화성시장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26년 12월 31일 까지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

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2. 관계도서는 화성시 보타닉가든추진단(031-5189-7176,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031-5189-6122))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 및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불입(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번호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성 명	주 소	
합계				284,789.1	256,284.1			
1	석우동	19-2	답	270.0	0.3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2	석우동	19-6	답	3,208.0	15.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3	석우동	19-7	답	82.0	44.9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4	석우동	19-8	답	5,121.0	247.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5	석우동	20-1	답	2,376.0	2,366.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6	석우동	20-2	답	2,669.0	609.1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7	석우동	20-3	답	2,262.0	282.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8	석우동	21	답	1,923.0	167.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9	석우동	21-3	답	118.0	64.9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10	석우동	22-1	답	2,077.0	0.5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11	석우동	45	공	215,240.2	215,240.2	화성시		
12	석우동	45-1	수	12,454.3	12,454.3	화성시		
13	석우동	45-2	도	2,162.3	2,162.3	화성시		
14	석우동	45-3	사	11,336.5	11,336.5	화성시		
15	석우동	45-4	도	182.0	182.0	화성시		
16	석우동	45-5	도	2550.8	2,550.8	화성시		
17	석우동	590-9	천	1,465.0	145.6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18	석우동	590-10	답	1,020.0	1,020.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19	석우동	590-11	천	335.0	22.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20	석우동	590-12	답	867.0	852.6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21	석우동	590-13	천	807.0	372.3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22	석우동	590-14	천	2,033.0	1,844.6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23	석우동	590-25	천	2,015.0	160.7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24	석우동	590-26	천	11,135.0	3,635.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25	석우동	590-31	답	632.0	472.5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26	석우동	590-74	천	448.0	36.0	한국토지공사	성남 분당구 정자동217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조건

[큰재봉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실시계획 변경 개요

사업명칭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사업위치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45번지
사업규모	A = 100.0㎡
사업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 2026. 12. 31.
사업시행자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1층 성명 : 화성시장(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보타닉가든추진단)

- 본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계획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부서(기관) 협의의견 조치계획을 준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의 효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보에 고시된 날부터 발생합니다.
-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을 받아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고절차, 지목변경 및 합필, 산지복구준공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동 사업 추진으로 인한 민원발생 등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 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유지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당해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시행령 별표5 공사 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사 배치기준]를 착수와 동시에 현장에 배치하여 시공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련부서와 인수인계를 완료한 후,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예정일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시 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98호(2002. 12. 2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큰재봉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6조의2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6. 3. 27.

화 성 시 장

1.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 붙임
2. 공원 조성계획(변경) 도면 : 붙임
3. 열람장소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4. 문의사항 :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 공원조성과 (☎031-5189-6122)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조서

1.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개요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45번지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큰재봉공원 내 동부권 공공정원화 사업 추진에 따라 공원조성계획(변경)하고자 함.

2. 공원현황

시설 구분	공원명	위 치	결정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근린공원	큰재봉공원	화성시 동탄구 석우동 45번지	256,284.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98호 (2002. 12. 26.)	

3. 공원조성 결정 조서

가. 공원조성 결정 총괄조서

구 분	시설면적(㎡)		건 축 물				공작물(기)		구성비(%)		비고
			바닥면적 (㎡)		연면적 (㎡)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56,284.1	256,284.1	-	-	-	-	85	95	100.0	100.0	
시설계	11,234.5	11,234.5	-	-	-	-	48	48	4.38	4.38	
기반 시설	소계	4,420.4	4,420.4	-	-	-	-	-	1.72	1.72	
	도로	3,725.6	3,725.6	-	-	-	-	-	1.45	1.45	
	광장	694.8	694.8	-	-	-	-	-	0.27	0.27	
조경시설	4,701.1	4,701.1	-	-	-	-	8	8	1.83	1.83	
휴양시설	433.1	433.1	-	-	-	-	14	14	0.17	0.17	
운동시설	352.4	352.4	-	-	-	-	12	12	0.14	0.14	
교양시설	661.2	661.2	-	-	-	-	1	1	0.26	0.26	
편의시설	654.3	654.3	-	-	-	-	12	12	0.26	0.26	
관리시설	12.0	12.0	-	-	-	-	1	1	0.00	0.00	
녹지 및 기타	245,049.6	245,049.6	-	-	-	-	37	47	95.62	95.62	

나. 세부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번호	시설면적(m ²)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바닥면적(m ²)		연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계			256,284.1	256,284.1	-	-	-	-	85	95	100%
기본 시설	소계		4,420.4	4,420.4	-	-	-	-	-	-	1.72%
	도로(소계)		3,725.6	3,725.6	-	-	-	-	-	-	
	광장(소계)	가	694.8	694.8	-	-	-	-	-	-	
	광장1	가-1	258.3	258.3	-	-	-	-	-	-	
	광장2	가-2	268.1	268.1	-	-	-	-	-	-	
	광장3	가-3	168.4	168.4	-	-	-	-	-	-	
조경 시설	소계		4,701.1	4,701.1	-	-	-	-	8	8	1.83%
	습지원(소계)	나	4,268.1	4,268.1	-	-	-	-	-	-	
	습지원 A	나-1	1,709.7	1,709.7	-	-	-	-	-	-	
	습지원 B	나-2	2,558.4	2,558.4	-	-	-	-	-	-	
	피크닉장	다	433.0	433.0	-	-	-	-	-	-	
	피크닉테이블	①	-	-	-	-	-	-	8	8	
휴양 시설	소계		433.1	433.1	-	-	-	-	14	14	0.17%
	휴게공간(소계)	라	376.5	376.5	-	-	-	-	-	-	
	휴게공간 A	라-1	203.6	203.6	-	-	-	-	-	-	
	휴게공간 B	라-2	172.9	172.9	-	-	-	-	-	-	
	휴게쉼터	마	56.6	56.6	-	-	-	-	-	-	
	휴게쉼터 A	마-1	28.3	28.3	-	-	-	-	-	-	
	휴게쉼터 B	마-2	28.3	28.3	-	-	-	-	-	-	
	전통팔각정자	②	-	-	-	-	-	-	1	1	
	육각정자	③	-	-	-	-	-	-	1	1	
	파고라	④	-	-	-	-	-	-	2	2	
	평의자	⑤	-	-	-	-	-	-	6	6	
	등의자	⑥	-	-	-	-	-	-	4	4	
운동 시설	소계		352.4	352.4	-	-	-	-	12	12	0.14%
	운동공간	바	352.4	352.4	-	-	-	-	-	-	
	체력단련시설	⑦	-	-	-	-	-	-	12	12	

다. 도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기 점	종 점	비고
기정	합 계				1,700.6	3,725.6	-	-	-	
기정	소로(연)	3류	1	4.0	94.2	388.3	진입로	공원경계부	녹지	
기정	소로(연)	3류	2	3.6	132.1	437.7	연결로	운동공간 바	공원경계부	
기정	소로(연)	3류	3	2.0	103.6	206.2	부진입로	공원경계부	운동공간 바	
기정	소로(연)	3류	4	3.4	39.1	132.9	연결로	녹지	광장 가-3	
기정	소로(연)	3류	5	3.5	106.7	355.0	연결로	주차장	광장 가-2	
기정	소로(연)	3류	6	1.4	145.8	204.1	부진입로	공원경계부	소로 3-2	
기정	소로(산)	3류	1	2.0	53.4	107.2	산책로	소로 3-1	휴게쉼터 마-1	
기정	소로(산)	3류	2	2.0	110.4	221.7	산책로	휴게쉼터 마-1	휴게공간 라-1	
기정	소로(산)	3류	3	2.0	40.7	81.5	산책로	휴게공간 라-1	수도시설	
기정	소로(산)	3류	4	2.0	210.0	419.9	산책로	테크관찰로 자-4	휴게쉼터 마-2	
기정	소로(산)	3류	5	2.0	66.7	158.3	산책로	휴게쉼터 마-2	공원경계부	
기정	소로(산)	3류	6	1.2	11.7	29.1	산책로	화장실	산책로 7	
기정	소로(산)	3류	7	1.2	29.5	35.4	산책로	소로 3-1	산책로 8	
기정	소로(산)	3류	8	1.2	30.7	36.6	산책로	산책로 7	산책로 9	
기정	소로(산)	3류	9	1.2	109.8	130.6	산책로	산책로 8	산책로7	
기정	소로(산)	3류	10	1.2	19.4	23.2	산책로	산책로 9	피크닉장 다	
기정	소로(산)	3류	11	1.2	7.4	8.9	산책로	산책로 9	녹지	
기정	소로(산)	3류	12	2.0	217.3	426.3	산책로	소로 3-1	수도시설	
기정	소로(산)	3류	13	2.0	13.0	15.5	산책로	수도시설	수도시설	
기정	소로(산)	3류	14	2.0	159.1	307.2	산책로	녹지	광장 가-2	



원영목역사

주소: 충청남도 서산시 신항면 신항리 119-1
 문의: 041-831-1111

DOHWA
 (주)오영목역사역사

대표이사: 오영목
 대표이사: 오영목

시설물 수량표

구분	구분명	수량	단위	비고
시설물	도로면적	1,000.00	㎡	1
	34775A	470	㎡	30.0
	34775B	470	㎡	30.0
	34775C	470	㎡	30.0
	34775D	470	㎡	30.0

도면번호: 2023.01.10
 도면명: 석우리썬밭 시설물 계획평면도
 도면규모: 1:500 (1/500)